

#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



## 미래교육



1. 학생성장 중심의 수업혁신
2. 핵심역량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3.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 책임교육



1. 출발선이 같은 교육
2.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3. 더불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 참여교육



1.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혁신
2. 지역사회의 함께 하는 교육생태계 확산
3.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한 교육행정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

지속가능한 생태·해양교육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학교안전망

부산교육은 언제나 **‘학생 중심’, ‘학교 지원’**이 먼저입니다

# 건강 더하는 학교급식 행복 나누는 영양교육

## ■ 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 ●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

-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급식비, 초등학교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 ● GMO(유전자변형농산물)없는 식재료 구입비 지원

- NON-GMO 식품비 지원: 1인 1식당 130원(급식비에 포함하여 지원)
- 지원품목(20개): 장류(국간장, 양조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쌀엿, 밀가루, 전분류(감자, 고구마), 식용유(해바라기유 등), 참기름, 두부류(경두부, 연두부, 순두부), 스위트콘, 토마토케첩, 김류[조미김(8절), 조미김가루], 튀김가루, 부침가루

### ● 학교 채식급식 운영

- 학교급식 채소·과일 먹는 날 확대·운영(40교)
- 학교 채식급식 연구학교 운영(5교) 및 성과보고회 개최(1회)

## ■ 영양교육체험관 운영

### ● 체험형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 연계 학생 체험 활동 및 교직원 조리체험 연수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체험형 영양교육, 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

### ● 온·오프라인 영양캠프 및 온라인 맞춤형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 초 4~6학년 비만학생 및 학부모 대상 온·오프라인 영양 체험·상담 활동(3주간, 200명)
- 온라인 식생활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영양진단 및 맞춤형 영양상담 제공
- 영양상담 지원단 구성·운영(10명) 및 영양상담전문가과정 운영 및 연수 실시(2회)

### ● 영양·식생활교육 체험 한마당 운영

- 유관기관 연계 영양체험·학교급식연구회 연구 성과 전시 및 체험

## ■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 ● 급식실 현대화 및 식당 설치

- HACCP 시설 기준 급식실 환경 개선(10교), 식당 설치(6교), 전기식 급식기구 지원(5종)

### ●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강화

- 위생·안전점검(연 2회), 식중독 예방 진단 위생 컨설팅(10교),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단' 운영

## ■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학교 운영

### ●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학교 운영

-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확대·운영(35교) 및 지원단 구성·운영(10회)
-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및 교육(지원)청 지도·점검(총2회)

### ● 식품알레르기 대응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 전문가 초청 영양사·교사, 조리사(원) 역량 강화 연수(2회),
- 전문기관 연계 학부모 대체식단 조리교실 운영(2회)
-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업무매뉴얼 제작·보급(3월)

## ■ 학교급식 우수레시피 지원

### ● 학교급식 우수레시피 제작·보급

- 학교급별 학교급식레시피북 제작·보급(12월)
- 실시간 검색 가능한 부산시교육청 ‘학교급식클라쓰’ 유튜브 운영(10회)

### ● 학교급식 조리컨설팅 운영 및 자발적 연구 활동 지원

- 영양·조리 전문 자문단(2인 1조, 4개팀) 구성·운영(16교, 32회)
- 초등 학교밥상연구회, 중등 학교급식레시피연구회 운영(8회)
- 학교급식 우수레시피 개발·조리실습 연수(4회)

# 목 차

♣ 2022학년도 주요 변경 내용 .....	1
<b>I.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b>	<b>15</b>
1. 학교급식 운영관리 .....	15
2. 학교급식 수요자 참여 확대 .....	16
3. NEIS 학교급식시스템 사용 .....	18
4.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표창 .....	19
<b>II.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b>	<b>23</b>
1. 학교급식 위생관리 .....	23
2.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 .....	24
3.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 추진 .....	26
4. 식기세척제 사용 관리 강화 .....	28
<b>III.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b>	<b>31</b>
1.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선정 .....	31
2. 식재료 구매시 계약 관련 법령 준수 .....	34
3. 식재료의 위생·안전성 확보 .....	38
4. 급식재료 시장조사 및 시장조사시스템 운영 .....	40
<b>IV.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b>	<b>43</b>
1. 학교급식 영양관리 .....	44
2. 학교급식 영양관리 실천 방안 .....	45
<b>V. 영양교육 및 식생활 지도 강화 .....</b>	<b>49</b>
1.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	49
2.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	50
3. 학교급식 지속가능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교육 .....	51
4. 학교급식 운영 지원 .....	52
5. 영양교육체험관 운영 .....	53

# 목 차

<b>VI. 학교급식 행정지원 강화</b> .....	<b>57</b>
1. 학교급식비 관리 .....	57
2. 학생급식비 지원 .....	60
3.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 확대 .....	62
4. 정부양곡 및 우유급식 지원 .....	63
5. 학교급식 인력관리 .....	63
<b>VII. 위탁급식 운영관리</b> .....	<b>69</b>
1. 위탁급식 운영방식 .....	69
2. 위탁급식 운영일반 .....	70
3. 위탁급식업체 계약 및 학교급식비 관리 .....	72
4. 일반 행정사항 .....	74
(부 록)	
[붙임 1] 석식 위탁운영에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 .....	77
[붙임 2] 학교급식 운영 감사지적 사례 .....	79
[붙임 3] 보고서식 및 참고서식 .....	81
[Q & A] 질문과 답변 .....	131

# 2022학년도 주요 변경내용



## I.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구분	변경 후	변경 전	비고
① 1. 학교급식 운영원칙 (p15)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변경>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반영
① 2. 학교급식 운영계획 (p15)	가. ‘학교급식 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포함 ※ <u>직영급식학교에서 2022년 학교급식 운영계획에 포함할 내용</u> : “ <u>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정상적인 직영급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체식 제공 또는 한시적 위탁급식 운영 가능</u> ”	가. ‘학교급식 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포함 ※ <추가>	<추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원활한 급식운영
① 3. 학교급식 공개 (p16)	<위치 이동> 나.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공고 시 공고 현황, 계약 완료 후 품목별·납품업체별 <u>계약현황</u>	사. 매 학년도말 기준 급식 실시현황 아.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공고 시 현황, 계약 완료 후 품목별·납품업체별 <u>계약현황</u> 및 <u>공급업체가 제공하는 &lt;후략&gt;</u>	<변경>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반영
① 4. 공동급식 운영 (p16)	나. 공동급식 운영 협조 <중략> - 비조리교와 공동관리 대상교는 급식전담교사 지정(급식업무를 학교구성원간 적절히 분배)	나. 공동급식 운영 협조 <중략> - 비조리교와 공동관리 대상교는 급식전담교사 지정	<추가> 교사노조 단체협약 사항 반영

구 분	변경 후	변경 전	비 고
② 2. 열린 학교급식 운영 (p17)	<p>나. 학교별로 ‘학교급식(공개)의 날’ 운영을 통해 급식과정 공유 및 시식회 등을 개최하여 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 유도</p> <p>다. 학생에게 제공되는 실제 급식 사진 등을 학교 홈페이지(학부모 모바일 앱 등 포함)에 게시하는 등 급식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 노력</p> <p>라. 학부모 총회 등 학부모 연수 시 학교급식의 안전성, 우수성 적극 홍보</p> <p>마. 매 학년도말 급식 실시 현황 공개</p> <p>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센터 운영</p>	<p>나. 학교별로 ‘학교급식(공개)의 날’ 을 운영하여 급식과정 참관, 시식회 등을 통해 급식에 대한 이해증진 및 참여 유도</p> <p>&lt;추가&gt;</p> <p>다. 학부모 총회 등 학부모 연수 시 학교급식의 안전성, 우수성 적극 홍보</p> <p>&lt;위치 이동&gt;</p> <p>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센터 운영</p>	<p>&lt;변경&gt; 2022년도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반영</p> <p>&lt;위치 이동&gt; “3.학교급식공개” “사” 항에서 이동</p>

## II.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구 분	변경 후	변경 전	비 고
① 2.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및 관계자 교육 강화 (p23)	<p>나. 학교급식종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폐결핵은 연 1회) 건강진단 실시,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 기록 관리(2년간) &lt;중략&gt; ※ <u>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진단 주기 일시적 조정(6개월 1회→1년 1회)</u></p> <p>- 건강진단 수수료는 급식운영 주체 부담 (직영급식학교: 학교장, 위탁급식학교: 위탁업주)</p> <p>※ <u>신규 채용 조리원의 건강진단 수수료 지원 가능</u></p>	<p>나. 학교급식종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폐결핵은 연 1회) 건강진단 실시,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 기록 관리(2년간) &lt;중략&gt; ※ &lt;추가&gt;</p> <p>- 건강진단 수수료는 급식운영 주체 부담 (직영급식학교: 학교장, 위탁급식학교: 위탁업주)</p> <p>※ &lt;추가&gt;</p>	<p>&lt;추가&gt; 2022년도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반영</p> <p>&lt;추가&gt;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수수료 지원 강화</p>

구 분	변경 후	변경 전	비 고
① 3. 학교급식 환경위생관리 (p24)	다.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천장, 닥트 등 위험 시설물의 대청소가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가능 <u>(2022학년도부터 연 2회 이상 위험구간 청소 실시)</u>	다.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천장, 닥트 등 위험 시설물의 대청소가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에 <u>위탁가능</u>	〈추가〉 학교급식실 위생안전 강화
② 2.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p25)	다. 조리실 출입 시 위생복, <u>위생모, 마스크 등 위생 복장 착용 철저</u>  사. <u>배식대에서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 재사용·조리 또는 보관 금지(폐기용 표시를 명확하게 한 후 보관하는 경우 제외)</u>	다. 조리실 출입 시 위생복, <u>위생모 등 위생 복장 착용 철저</u>  사. <u>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u>	〈추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반영 〈변경〉 식약처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반영
② 3. 학교 식중독 감시 보고체계 확립 및 발생 후 대응 강화 (p25)	다. 학교별로 충분한 용량과 기능을 갖춘 보존식 전용 냉동고를 구비하고, 보존식 보관시에 냉동고 온도를 확인·기록하며, 역학조사 기관에 보존식 인계시 수거증을 받고 인계  - <u>보존식은 조리·제공된 모든 음식을 종류별로 각각 1인분 분량(150g이상 보존 바랍직)을 담아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냉동 보관, 사고발생시 소독처리 등 훼손 금지(「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제5차 개정판의 ‘보존식’ 참고)</u>	다. 학교별로 충분한 용량과 기능을 갖춘 보존식 전용 냉동고를 구비하고, 보존식 보관시에 냉동고 온도를 확인·기록하며, 역학조사 기관에 보존식 인계시 수거증을 받고 인계  - <u>보존식은 제공된 모든 음식을 종류별로 각각 1인분 분량을 담아 -18℃에서 144시간(6일) 보관, 사고발생시 소독처리 등 훼손 금지</u>	〈변경〉 2022년도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반영
③ 2.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p27)	다. 특히, 급식실 종사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급식실 시설에 관한 안전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 6. 10.)」, 「 <u>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고용노동부, '21. 12. 29.)</u> 」를 설계과정에서 반영 <u>토록 조치</u>	다. 특히, 급식실 종사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급식실 시설에 관한 안전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 6. 10.)」을 설계과정에서 반영토록 <u>조치</u>  - 「 <u>학교급식정보센터 (www.pen.go.kr)/위생안전관리/급식안전보건교육</u> 」 <u>게재</u>	〈추가〉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반영

구 분	변경 후	변경 전	비 고
③ 4. 급식기구 구입 시 물품 구매 계약관련 법규 준수 (p27)	가. 급식기구 구입을 위한 “(가칭)급식기구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강화 - 대상: 추정가격 <u>5천만원</u> 이상 급식기구물품 구매 ※ 추정가격 <u>5천만원 미만</u> : 물품선정위원회 개최로 같음 가능	가. 급식기구 구입을 위한 “(가칭)급식기구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강화 - 대상: 추정가격 <u>3천만원</u> 이상 급식기구물품 구매 ※ 추정가격 <u>3천만원 미만</u> : 물품선정위원회 개최로 같음 가능	<변경> (가칭) 급식기구선정 위원회 개최 대상 기준 금액 상향

### Ⅲ.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구 분	변경 후	변경 전	비 고
①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확대 (p32)	나. “GMO없는 학교급식 식재료” 단계적 확대 ▪ 예산지원 : 학교급식비(식품비)에 <u>130원 포함하여 지원</u> - NON-GMO 학교급식 식재료 확대를 위해 매년 지원 대상품목 선정 및 안내 ▪ <u>2022학년도(20품목):</u> <u>원부재료가 국내산인</u> <u>장류(된장, 국간장,</u> <u>양조간장, 청국장, 고추장),</u> <u>밀가루류(밀가루, 튀김가루,</u> <u>부침가루), 쌀엿, 전분(감자,</u> <u>고구마), 참기름, 원재료가</u> <u>NON-GMO 증빙이 가능한</u> <u>유지류(해바라기유, 유채유,</u> <u>올리브유), 두부류(연두부,</u> <u>순두부, 경두부), 스위트콘,</u> <u>토마토케첩, NON-GMO 유지를</u> <u>사용한 김류(조미김(8절),</u> <u>조미김가루)]</u> - 구매방법: “공동조달제품” 으로 안내 된 “친환경 및 국내산” 제품 중 “(N)”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으로 자율 선택하여 구매. 단, 타제품 사용 시 아래 “[표] NON-GMO 식재료 세부기준” 을 철저히 확인 후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함	나. “GMO없는 학교급식 식재료” 단계적 확대 ▪ 예산지원 : 학교급식비(식품비)에 <u>120원 포함하여 지원</u> - NON-GMO 학교급식 식재료 확대를 위해 매년 지원 대상품목 선정 및 안내 ▪ “공동조달제품” 으로 <u>학기별 안내. “공동조달제품</u> <u>친환경 및 국내산” 인 “장류”,</u> <u>“밀가루”, “쌀엿”, 전분(감자,</u> <u>고구마), “참기름”,</u> <u>“두부류”, “토마토케첩”,</u> <u>“스위트콘” 과 일반(수입산)</u> <u>제품 중 “(N)” 표시가 되어</u> <u>있는 제품으로 자율 선택할 수</u> <u>있음</u> - 지원대상(NON-GMO) 식재료 세부기준[표 참조] ▪ 2020학년도 : 원부재료가 국내산인 장류(된장, 국간장, 양조간장, 청국장, 고추장), 밀가루, 쌀엿, 전분(감자, 고구마), 참기름, 원재료가 NON-GMO 증빙이 가능한 유지류(해바라기유, 유채유, 올리브유), 두부류(연두부, 순두부, 경두부), 스위트콘, 토마토케첩	<변경> 교육감 공약사항 2022년 주요업무계획

구 분	변경 후	변경 전	비 고
② 1.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관리 (p36)	<p>마. 인근 학교 간 공동구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재료 구매물량의 규모화로 구매비용 절감과 공동구매단 내 학교별 계약업무 순환 담당으로 행정업무 경감, 소규모 학교 식재료의 안정적인 조달</li> <li>- 학교급식식재료 공동구매 메뉴얼: 학교급식정보시스템 (www.pen.go.kr/교직원/급식정보센터/공지사항)</li> </ul>	<p>다.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메뉴얼 개발·보급(교육부, '14.9.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식재료 공동구매 메뉴얼: 학교급식정보시스템 (www.pen.go.kr/자료실, '18. 1. 24.게재)]</li> </ul>	<p>&lt;추가&gt; 2022년도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반영</p>

#### IV.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구 분	변경 후	변경 전	비 고
① 1. 건강 지향적이며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한 영양 관리 강화 (p43)	<p>나. 식단작성시 고려사항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쇼트닝, 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제공 최소화</li> </ul>	<p>나. 식단작성시 고려사항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추가&gt;</li> </ul>	<p>&lt;추가&gt; 2022년도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반영</p>
① 3.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철저 (p44)	<p>라.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운영 학교 확대</p>	<p>라.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시범학교 운영</p>	<p>&lt;변경&gt;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반영</p>
② 1.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실천 (p45)	<p>가. &lt;삭제&gt;</p>	<p>가. 학교급별 학교급식 1끼당 나트륨 줄이기 정책목표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2013년도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급식 1끼당 나트륨 섭취실태 조사 결과 초등학교 911mg, 중학교 1,099mg, 고등학교 1,454mg, 평균 1,155mg</li> <li>※ '13년도 감사원 조사결과 (서울, 경기 초·중·고 30개교): '08년 식약청 조사 시 학교급식 1끼당 평균나트륨928mg 보다 205mg 더 많은 1,133mg</li> </ul>	<p>&lt;삭제&gt; 2022년도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반영</p>

구 분	변경 후	변경 전	비 고
		- (정책목표) 초등학교 900mg, 중학교 1,000mg, 고등학교 1,300mg, 평균 1,067mg 수준 또는 이하로 저감화 추진	
② 1.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실천 (p45)	가.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 수립 다. <u>학교급식 당류 저감화 실천</u> - <u>가공식품으로 인한 당류 섭취를 제한하고 설탕, 물엿 등 첨가당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 당류 저감화 추진</u> - <u>조리식품, 음료수, 과즙 등의 당도측정에 당도계 적극 이용 (권장)</u>	나.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 수립 다. <추가>	<변경> 2022년도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반영

## V. 영양교육 및 식생활지도 강화

구 분	변경 후	변경 전	비 고
③ 1.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수립·시행 (p51)	나. (학교)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수립·시행 - 전처리 식재료 사용, 학생 기호도 조사·분석 및 적정량 조리·배식, 표준화된 조리 레시피 적용,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u>잔반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u> -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거하여 발생량 최소화 ※ <u>음식물쓰레기로 버리지 말아야 하는 폐기물 종류 참고 [참고19]</u>	나. (학교)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수립·시행 - 전처리 식재료 사용, 학생 기호도 조사·분석 및 적정량 조리·배식, 표준화된 조리 레시피 적용,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감량 노력 ※ <추가>	<변경> 2022년도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반영
③ 3. 채식급식 운영 및 교육 (p52)	나. 지역로컬푸드 사용 및 채식식단 제공 등 저탄소 생태교육 급식 운영 - 월 2회 이상 채식급식(‘고기 없는 월요일’, ‘채식의 날’ 등) 확대 실시 권장	나. 지역로컬푸드 사용 및 채식식단 제공 등 저탄소 생태교육 급식 운영 - 월 1회 이상 채식급식(‘고기 없는 월요일’, ‘채식의 날’ 등) 실시 권장	<변경>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반영

구 분	변경 후	변경 전	비 고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u>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21.5.26.)</u>  <u>채식급식이란 식물성 식재 료를 사용하여 건강에 필요 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 록 제공하는 학교급식으로 유제품, 난제품 등을 포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u> </p> <p>라. <u>학교채식급식 연구학교 운영 및 성과보고회 개최</u></p>	<p>&lt;추가&gt;</p> <p>&lt;추가&gt;</p>	
<p>⑤ 2. <u>영양교육체험관 프로그램</u> (p53)</p>	<p>다. 운영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교육과정 연계, 자유학기 (년)제 동아리활동, 진로체 험 연계 체험형 영양교육</u></li> <li>▪ <u>‘한식관’을 통한 우리 전 통음식과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교육</u></li> <li>▪ <u>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 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운영</u></li> <li>▪ <u>건강한 부산학생 만들기 영양캠프 운영</u></li> </ul> </li> <li>- 교직원: <u>학교관리자 대상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향 상 및 건강관리 능력 배양 ‘실내텃밭 만들기’ 및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직무연수</u></li> <li>- 학부모·지역주민: <u>영양 식 생활 개선을 위한 건강음식 만들기 및 조리체험 운영</u></li> <li>- 가족: <u>안전하고 간편한 영 양체험꾸러미 지원을 통한 영양교육 및 우리 전통 식 문화 보급과 정착</u></li> <li>- 온라인 맞춤형 영양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초4-6학년 비만 및 식습관 개선이 필요한 학생 및 학부모 온·오프라인 영양 체험, 상담 활동</u></li> </ul> </li> </ul>	<p>다. 운영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교육과정 연계, 자유학기 (년)제 동아리활동, 진로체 험 연계 체험형 영양교육</u></li> <li>▪ &lt;추가&gt;</li> <li>▪ &lt;추가&gt;</li> </ul> </li> <li>▪ <u>건강한 부산학생 만들기 영양캠프 운영</u></li> <li>- 교직원: <u>역량강화를 위한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레시피 개발’, ‘학교 급식 대량조리 비법 개발’ 등 직무연수 운영</u></li> <li>- 학부모·지역주민: <u>‘학교급 식 이해하기’, ‘백세시대 건강관리’ 등 맞춤형 프로 그램 운영</u></li> <li>- 가족: <u>방학 기간 중 가족과 함 께하는 영양·식생활체험 프 로그램 운영</u></li> </ul> <p>라. &lt;추가&gt;</p>	<p>&lt;변경&gt; 2022학년도 영양교육체험관 운영프로그램 반영</p>

구 분	변경 후	변경 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온라인 식생활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영양진단 및 맞춤형 영양상담 제공</u></li> <li>▪ <u>영양상담 지원단 구성 운영</u></li> <li>▪ <u>영양상담전문가과정 직무연수 및 학교급식관계자 영양상담 연수 실시</u></li> </ul>		

## VI. 학교급식 행정지원 강화

구 분	변경 후	변경 전	비 고									
① 1. 학교급식 경비 부담 (p57)	<p>나. 사용범위</p> <p>※ <u>학교급식비는 급식종사자의 인건비 및 연료비 등으로 사용</u></p>	<p>나. 사용범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학교급식비 사용 가능</td> <td>급식종사자의 인건비</td> <td>인건비</td> </tr> <tr> <td></td> <td>연료비 등</td> <td>상하수도 요금</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학교급식비 사용 가능	급식종사자의 인건비	인건비		연료비 등	상하수도 요금	<변경> 표현 형식 변경
구 분		내 용										
학교급식비 사용 가능	급식종사자의 인건비	인건비										
	연료비 등	상하수도 요금										
① 2. 학교급식비 운용 (p58)	<p>가. 학생급식비</p> <p>- <u>초등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유치원 급식비는 원아의 급식량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급식단가 이하로 조정 가능</u></p>	<p>가. 학생급식비</p> <p>- <u>급식학교병설유치원 급식비는 원아의 급식량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급식단가 이하로 조정가능</u></p>	<변경> 병설유치원을 유치원으로 수정 (단설유포함)									
② 1. 학기중급식비 지원 (p60~61)	<p>가. 지원대상: 국·공·사립 <u>유치원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u></p> <p>[표] 무상급식 추진경과 <u>유치원: 2022.3월</u></p> <p>나. 급별 급식비 지원기준</p> <p>- <u>유치원(1인당 지원금액): 1인 1식당 2,500원</u></p> <p>※ <u>공동급식 초등학교와의 지원 단가 차액은 유아학비 지원금으로 충당</u></p> <p>- 초등학교(1인당 지원금액)</p> <p style="padding-left: 20px;">~ 300명: 3,920원</p> <p style="padding-left: 20px;">301~ 500명: 3,780원</p> <p style="padding-left: 20px;">501~ 600명: 3,670원</p> <p style="padding-left: 20px;">601~ 800명: 3,590원</p> <p style="padding-left: 20px;">801~ 1,000명: 3,490원</p>	<p>가. 지원대상: 국·공·사립 <u>초·중·고등학교 학생</u></p> <p>[표] 무상급식 추진경과 &lt;추가&gt;</p> <p>나. 급별 급식비 지원기준</p> <p>- &lt;추가&gt;</p> <p>- 초등학교(1인당 지원금액)</p> <p style="padding-left: 20px;">~ 300명: 3,770원</p> <p style="padding-left: 20px;">301~ 400명: 3,800원</p> <p style="padding-left: 20px;">401~ 500명: 3,630원</p> <p style="padding-left: 20px;">501~ 600명: 3,520원</p> <p style="padding-left: 20px;">601~ 800명: 3,440원</p>	<p>&lt;추가&gt; 급식비 지원대상에 유치원 추가</p> <p>&lt;변경&gt; - 유치원 급식비 지원 단가 반영</p> <p>- 급식비 단가 인상 반영</p> <p>- 지원기준 변경</p>									

구분	변경 후	변경 전	비고												
	<p><u>1001명 이상: 3,440원</u></p> <p>- 중학교(1인당 지원금액) ~ 300명: <u>4,400원</u> <u>301~ 500명: 4,300원</u> <u>501~ 600명: 4,230원</u> <u>601~ 700명: 4,180원</u> <u>701~ 800명: 4,110원</u> <u>801~ : 4,040원</u></p> <p>- 고등학교(1인당 지원금액) ~ 400명: <u>4,730원</u> <u>401~ 500명: 4,540원</u> <u>501~ 600명: 4,410원</u> <u>601~ 800명: 4,330원</u> <u>801~ : 4,280원</u></p> <p>&lt;삭제&gt;</p> <p>다. 세부 지원기준 ○ 위탁급식학교 지원 단가 - 운반위탁: <u>5,000원</u> - 운영위탁: <u>급별·구간별</u> <u>급식비에서 300원 추가</u> <u>(상한 5,000원)</u></p>	<p><u>801~ 1,000명: 3,340원</u> <u>1001명 이상: 3,290원</u></p> <p>- 중학교(1인당 지원금액) ~ 300명: <u>4,200원</u> <u>301~ 400명: 4,240원</u> <u>401~ 500명: 4,100원</u> <u>501~ 600명: 4,030원</u> <u>601~ 700명: 3,980원</u> <u>701~ 800명: 3,910원</u> <u>801~ : 3,840원</u></p> <p>- 고등학교(1인당 지원금액) ~ 400명: <u>4,520원</u> <u>401~ 500명: 4,330원</u> <u>501~ 600명: 4,200원</u> <u>601~ 800명: 4,120원</u> <u>801~ : 4,070원</u></p> <p>○ <u>학교 급별 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u> - (후략)</p> <p>다. 세부 지원기준 ○ (운반)위탁급식학교 지원 단가: <u>5,000원</u></p>	<p>&lt;삭제&gt; 인건비 추가 지원 기준변경 &lt;변경&gt; 운영위탁급식 학교의 급식비 추가 지원</p>												
<p>④ 2. 학교 우유급식 운영 (p63)</p>	<p><u>「학교우유급식 표준 메뉴얼」에 따른 학교 우유급식 운영관리 및 우유급식 참여율 제고</u></p>	<p>가. <u>학교 우유급식 참여율 제고</u> 나. <u>학교 우유급식 운영관리 철저</u></p>	<p>&lt;변경&gt; 2022년도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반영</p>												
<p>⑤ 1. 배치기준 (p64)</p>	<p>가. 영양교사·영양사 - <u>2식 제공 학교에 영양교사 1명 추가 배치 확대</u> &lt;조리종사자 배치기준&gt; - 특수조건</p> <table border="1" data-bbox="403 1854 770 2051"> <thead> <tr> <th>연번</th> <th>특수조건</th> </tr> </thead> <tbody> <tr> <td>1~5</td> <td>생략</td> </tr> <tr> <td>6</td> <td>3식교 중 중식 급식인원이 150명 이상이고, 조식 및 석식 급식인원이 중식 급식인원 대비 70% 이상인 학교</td> </tr> </tbody> </table>	연번	특수조건	1~5	생략	6	3식교 중 중식 급식인원이 150명 이상이고, 조식 및 석식 급식인원이 중식 급식인원 대비 70% 이상인 학교	<p>가. 영양교사·영양사 &lt;추가&gt; &lt;조리종사자 배치기준&gt; - 특수조건</p> <table border="1" data-bbox="815 1854 1182 1944"> <thead> <tr> <th>연번</th> <th>특수조건</th> </tr> </thead> <tbody> <tr> <td>1~5</td> <td>생략</td> </tr> <tr> <td>6</td> <td>추가</td> </tr> </tbody> </table>	연번	특수조건	1~5	생략	6	추가	<p>&lt;추가&gt; 영양(교)사 업무부담 완화 &lt;변경&gt; 배치기준 변경 내용 반영</p>
연번	특수조건														
1~5	생략														
6	3식교 중 중식 급식인원이 150명 이상이고, 조식 및 석식 급식인원이 중식 급식인원 대비 70% 이상인 학교														
연번	특수조건														
1~5	생략														
6	추가														

구 분	변경 후	변경 전	비 고																		
⑤ 3. 인건비 지원 (p65)	나. 지원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직종</th> <th colspan="2">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조리원</td> <td>급식인원 40명 이하</td> <td>기본급 추가 자원(1명)</td> </tr> <tr> <td>3식교</td> <td>기본급 추가 자원(1명)</td> </tr> <tr> <td>특수조건</td> <td>기본급 추가 자원(1명)</td> </tr> </tbody> </table>	직종	지원내용		조리원	급식인원 40명 이하	기본급 추가 자원(1명)	3식교	기본급 추가 자원(1명)	특수조건	기본급 추가 자원(1명)	나. 지원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직종</th> <th colspan="2">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조리원</td> <td>초중고</td> <td>급식인원 300명 이하 : 기본급 추가 자원(1명)</td> </tr> <tr> <td>고</td> <td>3식교: 기본급 추가 자원(1명)</td> </tr> </tbody> </table>	직종	지원내용		조리원	초중고	급식인원 300명 이하 : 기본급 추가 자원(1명)	고	3식교: 기본급 추가 자원(1명)	<변경> - 인건비 추가지원 급식인원 기준 변경 - 특수조건 대상교 기본급 지원 표기
직종	지원내용																				
조리원	급식인원 40명 이하	기본급 추가 자원(1명)																			
	3식교	기본급 추가 자원(1명)																			
	특수조건	기본급 추가 자원(1명)																			
직종	지원내용																				
조리원	초중고	급식인원 300명 이하 : 기본급 추가 자원(1명)																			
	고	3식교: 기본급 추가 자원(1명)																			
⑤ 5. 급식종사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p66)	자. <u>급식관리실, 조리종사자 휴게실에 공기청정기 설치</u>	<추가>	<추가> 급식종사자 근무장소 및 휴식장소 공기질 개선																		

## VII. 위탁급식 운영 관리

구 분	변경 후	변경 전	비 고
① 1. 위탁급식 운영방식 (p69~70)	나. - <u>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u> - <u>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u> - <u>학교의 이전 또는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이 곤란한 경우</u> - <u>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 재난발생(감염병,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직영급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u>	나. - <추가>	<추가> 위탁급식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를 명시 [근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
③ 2. 업체 선정 및 계약 (p72)	나. 학교급식비 책정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학생급식비 ‘23.12.31.까지 부가세 면제	나. 학교급식비 책정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학생급식비 ‘21.12.31.까지 부가세 면제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부록. 보고서식 및 참고서식

구 분	변경 후	변경 전	비 고
[서식 11]	<u>NON-GMO 식재료 사용현황 보고</u> (학교, 교육지원청)	<u>학교급식품 납품업체 계약현황</u> <u>보고</u> (학교, 교육지원청)	<변경> 학교급식품 납품업체 계약현황의 매월 보고는 eaT시스템 활용으로 생략, Non-Gmo식재료 사용현황만 반기 보고
[참고 3]	학교급식 일일 <u>위생관리</u> 점검표	학교급식 일일 <u>위생·안전</u> 점검표	<변경> 식품의약품 안전처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기 준 반영
[참고 19]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지 말아야 하 는 폐기물 종류	<추가>	<추가> 2022년도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반영

※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자구 수정, 주요내용의 변경없는 재구조화, 위치변경 사항은  
주요 변경 내용에서 제외함



## I.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① 학교급식 운영관리

1. 학교급식 운영원칙
2. 학교급식 운영계획
3. 학교급식 공개
4. 공동급식 운영

### ② 학교급식 수요자 참여 확대

1.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
2. 열린 학교급식 운영
3.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 ③ NEIS 학교급식시스템 사용

1. 학교급식 자료 및 일지 작성
2. 위탁급식 학교 NEIS급식시스템 사용 의무화
3. 학교급식실시현황 기초자료 입력
4. 학교급식 개시/변경 보고

### ④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표창

1. 학교급식 운영평가
2. 급식운영 우수학교 및 유공자 표창



# I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등을 위해 급식운영 관리의 내실화
- 수요자 참여 확대 및 열린 급식 운영으로 급식 만족도 향상

## 1 학교급식 운영관리

### 1. 학교급식 운영원칙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 가.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인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나.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다.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라.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마.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바.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무상급식 지원 대상 제외)
- 사.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 아.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 자.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학교급식 운영계획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가. ‘학교급식 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포함
  - ※ 직영급식학교에서 2022년 학교급식 운영계획에 명시할 내용  
: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정상적인 직영급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체식 제공 또는 한시적 위탁급식 운영 가능”
- 나. ‘학교급식 운영계획’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 3. 학교급식 공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가. 매 년 학교급식 운영계획서(매 학년도 급식 개시 전 또는 운영위원회 심의 후 30일 이내 공개: 학교청렴노력도 평가지표 반영사항)
- 나. 매 학기별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 다. 주간·월간 식단표,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당일 식단 사진 및 만족도 조사 결과
- 라. 학교급식 위생·안전·영양기준 등 급식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품질등급 등 식재료에 대한 정보
- 바. 학교급식 예산·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사.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공고 시 공고 현황, 계약 완료 후 품목별·납품업체별 계약현황

### 4. 공동급식 운영

- 가. 공동조리 급식관리
  - 공동급식 비조리교 급식일지 작성 **【참고 1】**
    - 조리교와 같은 장소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조리교의 급식일지로 같음
  - 학교급식 운반 차량 관리책임자 지정, 학교급식 용도 외 사용 금지(운행일지 비치)
- 나. 공동급식 운영 협조
  - 관련 학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 급식비 결정, 업체선정, 완제품 급식 등 공동급식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
  - 비조리교와 공동관리 대상교는 급식전담교사 지정(급식업무를 학교구성원 간 적절히 분배)
  - 비조리교는 학사일정 사전 안내(변경 시 보고 철저), 급식운영비 지원 등 조리교의 급식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2

### 학교급식 수요자 참여 확대

#### 1.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



「부산광역시 공립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 2(소위원회)

-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자문 활동 수행
- 나.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학교구성원(교직원, 학생대표 등) 중에서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고 참여 가능한 자
  - 위원장은 소위원회 중에서 호선
  - 영양교사, 영양사 또는 학교급식담당 교직원(위탁급식)이 간사로 참여
  - 그 밖에 소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다. 학교 단위 ‘급식모니터’는 ‘급식소위원회’와 연계(통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희망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요원 인력풀’을 구성·활용
  -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단위 학교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모니터’ 활동 운영

## 2. 열린 학교급식 운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 심의 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7. 12. 29. 일부 개정)

- 사립학교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5차) 개정판(’21. 1. 교육부)」에 근거함.

- 가. 학교 홈페이지, 식생활관 등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급식게시판」 운영, 의견을 수렴하고 급식 개선에 적극 반영
- 나. 학교별로 ‘학교급식(공개)의 날’ 운영을 통해 급식과정 공유 및 시식회 등을 개최하여 교육의 일환인 급식에 대한 이해증진 및 참여 유도
- 다. 학생에게 제공되는 실제 급식사진 등을 학교 홈페이지(학부모 모바일 앱 등 포함)에 게시하는 등 급식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 노력
- 라. 학부모 총회 등 학부모 연수 시 학교급식의 안전성, 우수성 적극 홍보
- 마. 매 학년도말 기준 급식 실시현황 공개
- 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정보센터 운영

찾아가기([www.pen.go.kr](http://www.pen.go.kr))

부산광역시홈페이지/사용자별정보/(교직원)학교급식정보센터

- 위생·안전관리, 식생활교육, 급식재료시장조사시스템, 자료실, 공지사항, 관련 사이트 등 6개 영역으로 구성
- 학교급식 업무 매뉴얼,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 레시피, 학교급식 기본방향 등 급식 관련 정보공개 및 공유 활성화

### 3.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8조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가. 연 1회 이상 실시(상반기 중 반드시 1회 실시)

나. 대상 : 학생[전체 학생수의 30% 이상(또는 36학급 이상 학교는 특정 학년(반) 지정) 권장],  
학부모 및 교직원(권장)

다. 만족도 등 설문조사 결과 및 개선 조치사항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 3

### NEIS 학교급식시스템 사용

#### 1. 학교급식 자료 및 일지 작성

가. 급식일지, 주간/월간 식단, 시장조사자료, 검수일지 등

- 별도 관리되는 지출증빙서류(거래명세서 등)는 보존기한 5년('16 학교급식운영 감사 지적 사례)

나. NEIS 신규급식 시스템 사용방법: [학교급식정보센터([www.pen.go.kr](http://www.pen.go.kr))/자료실]에 게재

#### 2. 위탁급식 학교 NEIS '급식시스템' 사용 의무화

- 위탁업체와의 계약 시 NEIS '급식시스템' 사용 조건 제시

#### 3. 학교급식실시현황 기초자료 입력

가. 학교 보고자료 마감관리: '22. 2. 17.(목)까지

- 급식외관리/보고자료 마감관리/(급식학교 및 학생 수 현황), (급식인력 및 학부모 참여 인원),  
(급식예산 연간 집행액 현황)

나. 교육지원청 보고: '22. 2. 25.(금)까지

- 학교급식실시현황: 각급학교 NEIS 전송 자료의 정확성 확인 후 보고 **【서식 9】**

#### 4. 학교급식 개시/변경 보고

가. 학교급식 개시보고서(신설학교): 급식 개시 후 10일 이내

나. 학교급식 변경보고서(기존학교): '22. 3. 4.(금)까지

- 보고자료 마감관리: 급식외관리/보고자료 마감관리/학교급식 변경보고서

다. 교육지원청 보고: '22. 3. 8.(화)까지

- 마감현황 확인·관리: 학교급식통계/보고자료 제출관리/학교마감 현황관리

- 각급학교 NEIS 전송 자료 정확성 확인 후 마감

## 4

#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표창

## 1. 학교급식 운영평가



### 「학교급식법」 제18조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5차) 개정판」 ('21. 1월, 교육부)

- 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평가 점검표 및 점검항목에 따라 2학기 중 평가 실시
- ※ 코로나19로 인해 2학기 중 평가가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조정 가능

## 2. 급식운영 우수학교 및 유공자 표창

- 학교급식 운영평가 결과 우수교 및 유공자 등에 대하여 표창 실시



## II.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 ① 학교급식 위생관리

1. 학교급식 HACCP시스템 적용의 내실화
2.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및 관계자 교육 강화
3. 학교급식 환경위생관리

### ②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

1.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철저
2.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3. 학교 식중독 감시·보고체계 확립 및 발생 후 대응 강화

### ③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 추진

1. HACC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급식시설·설비 개선
2.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3.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식당시설 확보 연차적 추진
4. 급식기구 구입 시 물품 구매 계약관련 법규 준수

### ④ 식기세척제 사용 관리 강화

1. 식기세척제 안전관리 강화





- 대량의 식재료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
- 학교급식 관계자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통한 식중독 발생 예방

## 1 학교급식 위생관리

### 1. 학교급식 HACCP시스템 적용의 내실화

- 가. 학교급식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기준’ 준수
- 나.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5차 개정판, ’21. 1월)’ 기준 적용 철저
- 다. HACCP제도의 완전한 실천을 위한 학교장 및 교직원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
- 라. 식단검토부터 배식까지 식재료 및 조리공정관리(가열, 비가열) 철저
- 마. 효과적인 위해요소분석 및 개선조치, 검증 수행

### 2.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및 관계자 교육 강화

- 가.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매일 조리작업 전 조리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은 적절한 조치 후 조리작업 참여 조치
  - (예)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소독 등 적절한 치료 후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며, 복통,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함
- 나. 학교급식종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폐결핵은 연 1회) 건강진단 실시,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 기록 관리(2년간)
  - 다음 검진일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준용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결정 (예: 이번 검진일이 ’21년 12월 1일이라면, 다음 검진은 ’22년 6월 1일 까지 실시)
  -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진단 주기 한시적 조정(6개월 1회→ 1년 1회)
  - 건강진단 수수료는 급식운영 주체 부담 (직영급식학교: 학교장, 위탁급식학교: 위탁업주)
  - ※ 신규 채용 조리원의 건강진단 수수료 지원 가능

#### 다.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위 위생교육 강화

- (학교) 학생, 교직원(조리종사자 포함), 학부모 등 대상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 실시
- (교육청) 급식관계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참고 15】** 및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 보급
  - 교육(지원)청 단위 컨설팅·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할 경우 활동 시작 전 별도 교육 실시
  -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또는 소속 교육연수원 등의 연수과정에 반영하거나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급식종사자 직종별 ‘직무교육프로그램’ 운영

### 3. 학교급식 환경위생관리

- 가. 급식시설 정기방역 실시 및 소독증명서 비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83조, 시행령 제 24조, 시행규칙 제36조)
  - 하절기(4~9월 중) 2개월 1회 이상 실시, 동절기(10~3월 중) 3개월 1회 이상 실시
- 나. 학교급식실 에어컨 위생관리
  - 이동식 및 고정식 에어컨 필터 등 주기적 세척·소독 관리 철저
- 다.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천장, 닥트 등 위험 시설물의 대청소가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 가능(2022학년도부터 연 2회이상 위험구간 청소 실시)
- 라. HACCP제도 검증을 위한 학교급식실 미생물 검사
  -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감사의뢰기관(지역보건소, 부산보건환경연구원 등)과 사전 협의 후 연간계획 수립·시행
  - 조리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칼, 도마, 식판 등 미생물 검체 채취
  - 미생물 검사 결과 부적합 시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결과 처분기준」 【참고17】 에 의거하여 시정조치 및 재검사 실시

## 2

##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

### 1.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철저

- 가. 학교는 매 급식 때마다 일일 **위생관리 점검 실시** 【참고 3】
- 나. 교육청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연2회(학기별 1회)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청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횟수 및 방법 등 조정 가능
  - 1학기 점검은 위생관리 지침서의 점검표를 토대로 점검하고, 2학기 점검은 1학기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
    - 1학기 점검결과 위생관리 수준 향상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2학기 점검 대체 가능 (단,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에 한정)
  - 교육지원청 공무원과 학부모 등 학교급식 점검단원 1명이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여 급식과정 전반에 대한 위생·안전점검 실시('14년~)
    - 지적사항 발견 → 시정명령(서면) → 차기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 및 미이행 시 징계(「학교급식법」 제22조)
- 다. 식중독 예방 관련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 지자체가 주관하는 학교급식지원 및 식중독 예방관리 등 식품안전시책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 각급 학교에서 다빈도로 사용하거나 지난해 식중독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되었던 종류의 비조리제품(완제품) 제조·가공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 실시
    - 교육(지원)청 주관 점검결과 지적사항 관계기관 처분 요청 및 식재료 공급업체 등 급식 관련 시설 점검 결과 관계법령 위반자 처분 강화

라. 간부직원 불시 점검 실시

- 학교급식 위생관리 취약시기(개학기)에 교육감(교육장)이하 간부직원이 학교 식재료 납품 및 검수현장 불시 점검

## 2.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가. 매 작업 전 조리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및 급식 전 학생 손 씻기 교육 실시

나. 학교장 승인 없이 외부음식(간식)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불가피하게 외부음식물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보존식 관리요령’에 의거, 별도로 표기하여 보관

- 학교장 승인 없이 교직원, 학부모 등이 임의로 간식을 제공하는 사례 금지

다. 조리실 출입 시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등 위생 복장 착용 철저

라. 학교급식과 관계없는 동창회, 학부모 행사, 교직원 친목 행사 등에 조리장 사용 금지

마. 식중독 발생 집중기 가급적 가열 식단 제공 권장

바. 1일 2식 이상 급식제공학교는 급식관리 책임자를 각각 지정·운영(인수인계 및 보존식 보관 관리 철저 등)

사. 배식대에서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 재사용·조리 또는 보관 금지(폐기용 표시를 명확하게 한 후 보관하는 경우 제외)

아.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배식 직전 조리된 음식의 품질(맛, 질감, 조리 상태 등) 확인을 위한 검식 실시(학교급식법시행령 제8조, 식품위생법 제52조2항)

자. 학교급식 위생관리 등을 위해 교직원 전용 별도 배식대(배식차) 운영 최소화

차. 조리종사자 위생 복장(고무장갑, 앞치마) 및 칼·도마 구분 사용 표준 권장안 안내 시행('21. 3월)

### ▪ 참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 11. 6. 시행)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3. 학교 식중독 감시·보고체계 확립 및 발생 후 대응 강화

가. 각급 학교는 매일 결석·조퇴·지각 학생 수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집단환자 발생여부를 파악하고, 주요증상을 평소와 비교하여 집단환자 발생여부 모니터링

- 학교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군·구(보건소)에 신고하고, 초동단계 신속 대응조치 강구

- 식중독 대책반 운영 및 환자치료와 급식대책 마련(급식 중단 및 재개는 보건소 등 방역당국과 협의 후 결정) 등 학사 일정 차질 최소화 노력

-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보고, 일일현황보고, 결과보고 참고 【서식 12~14】

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식중독(의심)환자 집단발생 인지 즉시 시교육청에 유선 등으로 보고하고, 역학조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원인 및 오염경로 규명 노력

-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감염자·접촉자에 대한 관리 및 감염자의 구토물·분변 등 환경인자 및 생활시설 관리 철저

-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중간 검사결과 검토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공받아 식중독예방 및 재발방지 업무에 활용
- 다. 학교별로 충분한 용량과 기능을 갖춘 보존식 전용 냉동고를 구비하고, 보존식 보관시에 냉동고 온도를 확인·기록하며, 역학조사기관에 보존식 인계시 수거증을 받고 인계
- 보존식은 조리·제공된 모든 음식을 종류별로 각각 1인분 분량(150g 이상 보존 바람직)을 담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냉동 보관, 사고발생시 소독처리 등 훼손 금지(「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제5차 개정판의 ‘보존식’ 참고)
  - 비조리교도 조리교와 별도로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보관
- 라.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중독 발생원인에 따라 관련 업체 제재 및 원인제공자, 관리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여 위생관리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 제고
- 마.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급식 위생사고 보상 규정 적용 철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 학교식중독 사고 포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의 의거 학교안전사고(식중독 포함) 발생 시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공제회에 통지

판단 항목	직영급식 (학교장, 납품업자 등)	위탁급식 (위탁급식업자)	비고
식중독 원인균 검출 (식재료에 의한 원인)	납품업자 보상	위탁급식업자 보상	※ 학교배상책임보험 교육청에서 일괄가입 : 학교급식사고와 관련한 과태료 (학교안전공제중앙 회)
식중독 원인균 검출 (조리 부적정 등 취급소홀, 종사자 및 시설오염 등)	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위탁급식업자 보상	
식중독 원인균 미검출 (원인불명)	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자 결정	

### 3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 추진

#### 1. HACC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급식시설·설비 개선

- 가. 2000년부터 HACCP 개념의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도입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5차) 개정판」(’21. 1. 교육부)
- 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등 작업공간 구분
- 다. 실시간 CCP 기록관리 업무전산화를 위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정보화” 지속적 추진
- 라. 다기능오븐기, 보온·보냉 배식대 등 능률적인 급식기구 확충
  - 오븐기 등 급식기구는 국산 제품 우선 구입 적극 추진

- 마. 고온 다습한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해 기 설치된 냉방기(에어컨 등) 상태 확인 및 개선, 공조장치 및 전기식 기구(인덕션 등) 설치 확대 등
- 바.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학교의 급식시설·기구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학기 시작 전 개·보수 완료 조치
  - 학교별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 노후도, 작업 공간 구획 여부, 조리실 적정 온도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 후 개선

## 2.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 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학교별 급식여건 및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현대화 사업 계획 수립·추진
  - 노후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는 방안 마련('16 교육부 국정감사 지적사항)
- 나.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급식기구선정위원회'등 별도 위원회 구성
- 다. 특히, 급식실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급식실 시설에 관한 안전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 6. 10.)」,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고용노동부,'21. 12. 29)**」를 설계과정에서 반영토록 조치
- 라. 설계 및 급식기구선정과정에서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조리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마. 학기 중 급식 중단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 3.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식당시설 확보 연차적 추진

- 가. 식당시설은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 나. 교실배식 중인 학교는 유희 공간 확보 노력 등 식당배식으로 전환 추진
- 다. 학기 중 급식 중단으로 인한 학부모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방학 기간 추진 노력

## 4. 급식기구 구입 시 물품 구매 계약관련 법규 준수

- 가. 급식기구 구입을 위한 “(가칭)급식기구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강화
  - 대상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급식기구물품 구매
    -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 물품선정위원회 개최로 같음 가능
  - 학교장 및 행정실장 배제
  - 외부위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대표, 기존 직영급식학교 영양교사·영양사 등] 50% 이상 위촉
  - 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물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름(재정과-16267, '20. 9. 1.)
- 나. 운영
  - 기구 선정, 계약방법 등 결정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 시 업체 평가방법(평가문항, 배점기준 등) 결정 →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후 최종 업체 선정
    - 위원회에서는 학교 시설현황, 물량 및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
  - 위원회 녹취(5년 보관) 및 회의록 작성(참가자 전원 서명) 의무화
  - 급식기구 검수 시 00위원회 학부모위원, 검수책임자 및 영양교사, 영양사 등 복수검사

▪ 급식기구 배치 도면 작성

교육(지원)청 시설과(안전기획과 산업안전보건팀 의견수렴 등)에서 작성 → 학교 검토 후 급식실 현대화 시설 설계도에 반영

민원유발 사례1 : 배치도면 작성 시 특정기구업체가 관여하지 않도록 처리

민원유발 사례2 : 급식기구선정위원회 회의 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제안 설명회를 하는 사례

## 4 식기세척제 사용 관리 강화

### 1. 식기세척제 안전관리 강화

가.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제 및 행굼보조제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15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용법에 맞게 사용

- 식기 등 급식기구에 세척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반드시 행굼 작업 실시

나. 세척제 구매 시 원료 및 표시사항 확인 철저히 하고, 원재료 미표시 등 부적합 제품 납품 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

다. 학교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기 등 급식기구세척제는 학생들과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성을 위하여 수산화나트륨(NaOH) 등 유해화학물질 함유량 1% 미만 제품으로 사용 제한

- 수산화나트륨(NaOH)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유독물질’로 식기세척제로 사용 불가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3조 [별표 1]

라. 월 1회 이상 세척제 잔류여부 확인검사 후, CP2 기록지 하단에 기록하고, 확인검사 시 시약이 묻은 식기 등 급식기구는 다시 위생적으로 세척·소독

- pH 시험지법 또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알칼리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지시약으로 일반적으로 세척제 잔류여부 검사에 사용됨)으로 검사

▪ pH시험지 등 검사시약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되, 검사담당자 대상으로 보관 및 취급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등)

### Ⅲ.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선정

1.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2.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확대
4.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체제 강화

#### ② 식재료 구매 시 계약 관련 법령 준수

1.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관리
2.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불공정 행위 근절
3. 식재료 등 유해·하자물품 납품업체 제재 조치 강화
4. 학교급식 분야 청렴도 개선

#### ③ 식재료의 위생·안전성 확보

1. 식재료 검수 철저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검사
3. 축산물 납품 및 검수 철저
4. 식재료 납품업체(대표자) 대상 식품위생 및 건전성 교육 실시

#### ④ 급식재료 시장조사 및 시장조사시스템 운영

1. 급식재료 시장조사 실시
2. 「급식재료 시장조사시스템」 운영



# III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심의기능 강화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고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1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선정

### 1.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규정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부합되는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 후 사용
- 나. 식재료의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기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의무화
  - 농·수·축산물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 해소
- 다. 김치 완제품은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 의무화하고, 상수도 사용 업체 또는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등을 통해 살균·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업체 권장
  - 병원성 대장균 오염이 우려되는 시기(8~9월)에는 숙성(pH 4.3 정도)된 김치류 제공 권장

### 2. 학교급식 「식재료원산지표시제」 준수

- 가. 표시대상: 농축산물(9개), 수산물(15개)
- 나. 표시방법: NEIS 급식시스템 출력기능 활용, 원산지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는 가정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주간 식단표는 식사장소(식당, 교실 등)에 게시  
[식재료 원산지 표시대상 식품]

품목	표시대상(원산지표시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농산물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국수, 콩비지)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및 그 가공품

-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대상임
- (농축산물) 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 [원산지표시종합안내] 참조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 - [원산지표시] 참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참조

###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확대

#### 가.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조달사업

##### - 식재료 공동조달사업

- 공동조달 품목, 규격 및 최종 제품 선정 : 식재료 공동조달사업 추진단(17명)
- 공동구매 : 조합협의체(eaT시스템 통한 입찰방식)
- 공동조달 단위 기간 : 6개월(학기 단위)
- 공동조달 대상 품목 : 공산품(친환경, 국내산, 일반, 냉동·냉장)
- 납품방법 : 학교가 요구하는 공동조달 품목을 낙찰(계약)업체가 구매하여 납품

##### - 공동조달 품목·품질 기준(확정 '15. 2. 25, 개정 '15. 10. 5, '18. 10. 31.)

-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
- 공동조달 물품은 제조업체와 경쟁입찰 원칙 ⇒ 구매과정 투명화
-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 우선 선정
-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등의 업체 포함) 생산 우수제품 발굴
- 원·부재료 국내산 친환경 생산물 우선 사용(장류는 국내산)
- 전통인증식품, 지리적 표시제 등록 제품, HACCP인증 제품 등
- 유해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유전자 조작식품 제외(NON-GMO), 저염제품 선정 권장
- 방사능 검사 해당품목의 경우 시험성적서 첨부
- 제조업체 HACCP 지정 의무화(전통인증식품 예외)

#### 나. “GMO 없는 학교급식 식재료” 단계적 확대[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

민선 4기 교육감 공약사항

“GMO 없는 학교급식 식재료 단계적 확대” 시행('19. 3월부터)

- 2019학년도부터 시행
- 학교급식비(식품비)에서 NON-GMO 식재료 구입
  - 초·중·특수학교는 의무사항, 고등학교는 권장
  - 예산지원 : 학교급식비(식품비)에 130원 포함하여 지원
- NON-GMO 학교급식 식재료 확대를 위해 매년 지원 대상품목 선정 및 안내
  - 2022학년도(20품목) : 원·부재료가 국내산인 장류(된장, 국간장, 양조간장, 청국장, 고추장), 밀가루류(밀가루, 튀김가루, 부침가루), 쌀엿, 전분(감자, 고구마), 참기름, 원재료가 NON-GMO 증빙이 가능한 유지류(해바라기유, 유채유, 올리브유), 두부류(연두부, 순두부, 경두부), 스위트콘, 토마토케첩, NON-GMO 유지류를 사용한 김류[조미김(8절), 조미김가루]
- 구매방법: “공동조달제품” 으로 안내 된 “친환경 및 국내산” 제품 중 “(N)”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으로 자율 선택하여 구매. 단, 타 제품 사용 시 아래 “[표] NON-GMO 식재료 세부기준”을 철저히 확인 후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함
- NON-GMO 식재료 사용현황 보고 : 반기별 보고 【서식 11】  
(3~8월분 ⇒ '22. 9. 9.(금)까지, 9~2월분 ⇒ 2월 학기말방학 전까지)

[표] NON-GMO 식재료 세부기준

물품명	세부기준	예외
장류 (국간장, 양조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부 원료 국내산 이상 제품</li> <li>■ 전통식 간장, 된장은 6개월 이상 발효된 것 (전통식품인증제품)</li> <li>■ 양조간장 산분해방식 금지</li> <li>■ 방부제, 화학조미료 및 발효억제제 등 화학적 합성첨가물 사용 금지</li> <li>※ 예외조항 삭제</li> </ul>	수입산 불가
유지류 (올리브유, 유채유 해바라기유, 참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원료 사용 원칙</li> <li>■ NON-GMO 원료 사용</li> <li>■ 참기름, 들기름은 벤조피렌 불검출 제품</li> <li>■ 정제유의 경우 가공보조제(핵산, 가성소다, 인산, 백토)가 최종제품에 남지 않아야 함</li> <li>■ 경화유 사용 금지</li> </ul>	<p>원재료가 국내산 생산이 없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p> <p>※ 원재료 수입국(업체)에서 발급한 NON-GMO 증명서류 제출</p>
밀가루류 (밀가루, 부침가루, 튀김가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밀 사용</li> <li>■ 중금속 기준 이하</li> <li>※ 제품의 성격상 필요 성분 (중탄산나트륨 등) 소량 사용 가능</li> </ul>	
쌀엿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원료(쌀, 엿기름) 사용</li> <li>■ 액화요소 사용 금지</li> <li>■ 식품첨가물 무첨가, 이물질 없는 것</li> </ul>	
전분류 (감자, 고구마 전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감자, 고구마 사용</li> <li>■ 화학물질 사용 금지</li> </ul>	
두부류 (경두부, 연두부, 순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원료 사용</li> <li>■ 국내산 소금 사용</li> <li>■ 식품첨가물 무첨가, 이물질 없는 것</li> <li>※ 공정상 첨가물 사용 시 천연첨가물 우선 사용, 화학첨가물 최소화</li> </ul>	<p>원재료가 국내산 생산이 없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p> <p>※ 원재료 수입국(업체)에서 발급한 NON-GMO 증명서류 제출</p> <p>※ 수입산의 경우 공정무역 또는 민중교역 물품 우선</p>
김류 (8절 조미김, 조미김가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김 사용</li> <li>■ NON-GMO 유지류 사용</li> </ul>	
기타 (토마토케첩, 스위트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친환경 원재료 우선 사용</li> <li>■ 국내산 원재료 사용</li> <li>■ 첨가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MO 첨가물 사용 금지</li> <li>- 증점제 사용 금지</li> <li>- 가공 식재료 첨가물 기준 준용</li> </ul> </li> </ul>	<p>원재료가 국내산 생산이 없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p> <p>※ 원재료 수입국(업체)에서 발급한 NON-GMO 증명서류 제출</p> <p>※ 수입산의 경우 공정무역 또는 민중교역 물품 우선</p>

다.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사용

-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HACCP 및 인증품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에서 HACCP 지정업체, 부적합 업체 관리, 행정처분 현황 조회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품 및 방사사육(난각코드 끝자리 1) 또는 축사내 평가(난각코드 끝자리 2) 계란 사용 권장

#### 4.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체제 강화

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 적극 협조('20 시의회 건의사항)

- 부산시에서 “우수식품” 으로 인증 받은 제품 적극 사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행

나. 지역제한 관련 법규

- 제한입찰계약의 지역제한은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 하되,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 소재지, 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제4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 제2절 4.지역제한 -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수의계약 시 지역 제한할 수 있으며, 지역사업자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4)

## 2) 식재료 구매 시 계약 관련 법령 준수

### 1.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관리

가.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단가 산출로 양질의 식품 구매

- 기초금액 산출 시 최빈가, 평균가 순으로 적용(최저가 적용 금지)

나. 식재료 구매 시 원산지, 품질등급 등 품질기준 명시 및 검수 철저

- 식재료 현품설명서에 4개 이상의 브랜드명을 표기하거나, 브랜드명을 지정하지 않고 규격·성분·품질기준을 기재

-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예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이상 허용(±5% 내에서 허용공차 인정)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의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시·도교육청 계약업무 협의체 행안부 질의사항(2018. 5월 계약담당자 협의회)  
위 단서내용에 대해 지정한 특정 상표 등에 대하여 특혜소지의 오해가 없도록 당위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품질·성능·조건 면에서 동등 이상의 다수 상표가 있는 경우라면 다수 상표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목적, 특징, 학교급식정책방향, 선호도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근거서류) 선호도조사표, 동등이상의 품질인증제품 비교표, 우수품질에 대한 공인기관의 증명서, 가공식품 비교표, 저염·저당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필요

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한 업체 등 적격 업체를 통해서 식재료 구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에 식품 판매가 가능한 경우(국조실 현장 점검 건의 사항, '14. 8월)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품(축산물)제조·가공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해 집단급식소와 직접 계약하여 판매(대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 하거나,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 ① 식육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직접 납품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 ②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된 업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체)가 소분, 분할, 재포장 등의 과정 없이 유통(배달)만 하여 직접 납품하는 경우는 가능
- ※ 학교에서 HACCP 제조·가공 지정업체로 공고를 한 경우에는 ①에 해당하는 업체는 가능하며, ②에 해당하는 업체는 공고 조건에 맞지 않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 의한 ‘농업인’과 ‘어업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 ※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7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계약법령 준수**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우리교육청(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10. 7. 28.) 및 교육부(학교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 '10. 7. 26.) 계약관련 지침(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시 수의계약 불가)  
※ 단,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구매하는 식재료는 2천만원까지 1인 수의계약 가능  
(※ 필히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등 준수

-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승인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이용
  - ※ 시·도교육청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간에 ‘GREEN CLEAN 협약’ 체결
- (제한적 최저가 적용) 적정한 가격에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구매를 위해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제한적 최저가(낙찰 하한율)” 적용 의무화('12. 9월~)하고 입찰공고 시 동 내용 포함
  - ※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 90% 이상, 2천~5천만원 이하는 88% 이상
  - ※ 추정금액 5천만원 초과 시 반드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식재료 구매 계약 추진  
(‘적격심사’로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17. 8월)

- (기초금액의 공개)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가격 조사 기준 정립을 위하여 입찰 결과 낙찰된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기초금액 공개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3절 3.
- (전문 품목별 분리 구매) 식재료의 일괄 발주에 따른 교차오염의 위험을 낮추고 식재료 운반, 보관 시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식재료의 전문 품목별 분리 구매 추진
  - ※ 축산물의 경우 육류(소, 돼지)와 가금류(닭, 오리) 분리 구매
  - ※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위해 임의로 분할발주 금지. 월 단위 계약 원칙
  - ※ 신선육(원료육)과 공산품(양념류, 소스류 등) 분리 구매
- (학교급식 계약정보 모니터링) K-에듀파인 클린재정 시스템을 활용한 학교별 자체점검 및 교육청 확인 점검
  - ※ 시스템 사용방법: K-에듀파인 사용자지원서비스 > 정보마당(학교)에 게시
  - ※ 분할수의, 집행 잔액 불법사용 및 수의계약 기준금액 초과 등 위반사례 모니터링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공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를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35호)>

- 가공육류 및 조리육류(식육가공품, 불고기패티), 신선 또는 냉동한 어류 및 어류부산물(어육가공품, 새우패티, 골뱅이통조림), 해조류(조미김), 각종소스류(요리용 소스, 카레), 장류(간장, 고추장, 된장), 빵·비스킷 및 쿠키(신선한빵, 냉동빵, 말린빵, 건빵, 상온보관용 빵), 파스타 및 면류(면류), 김치(총각김치), 통조림 또는 김치(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참치캔통조림)

-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
  - ※ 중·소기업·소상공인업 확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eaT시스템(중소기업인증정보 안내)”
-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명시되어있는 예외적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기관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물품이 예외조항에 해당됨을 공표하고 동 내용을 구매공고문에 명시하여 공고

마. 인근 학교 간 공동구매

- 식재료 구매물량의 규모화로 구매비용 절감과 공동구매단 내 학교별 계약업무 순환 담당으로 행정업무 경감, 소규모 학교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
-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매뉴얼: 학교급식정보시스템([www.pen.go.kr/교직원/급식정보센터/공지사항](http://www.pen.go.kr/교직원/급식정보센터/공지사항))

## 2.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불공정 행위 근절

### 가.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의 불공정행위 제재조치 강화

-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aT, 조달청)이 IP 중복사용 등 불공정행위 의심업체 선별(색출)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조사요청) 또는 경찰에 고발
- 공정위 조사(수사)결과 불공정행위 확인업체 명단을 시·도교육청에 통보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재조치 강구(부정당업자 등록)
- 부정당업자는 전자조달시스템(G2B, eaT 등)에 등록하여 제재조치 강화
  -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규정
  - ※ eaT시스템 등록기준 강화('16.12.22.개정): 신규 및 기존 공급업체 실명인증제 실시

### 나. 불공정행위 의심업체 및 위생분야 합동점검 협조

- aT, 조달청, 공정위,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식재료 공급계약 불공정행위 의심업체 합동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청은 식품위생분야 등 점검에 적극 협조

### 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시 식품관련 전문가 참여 협조

-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급식소위원회의 학부모가 학교급식 관련시설(식재료 공급업체 등) 점검 시는 식품관련 전문가인 영양교사, 영양사가 동행(참여)하도록 개선

### 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학부모, 시민단체, 영양교사, 영양사, 교직원 및 교육청 급식업무 담당(자)
- 역할: 학교 납품계약업체 대상 시설, 서류, 위생 상태 등 상시 점검

## 3. 식재료 등 유해·하자물품 납품업체 제재 조치 강화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유해·부정물품 납품업체 제재를 위해 해당 입찰자의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품질정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나. 식재료 검수 시 유해·하자물품 납품사례 등에 대한 업체평가 자료를 토대로 불량식품 등 납품업체 제재, 납품된 식재료 오염 등으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도 역학조사결과 귀책사유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제재조치 시행

- 식재료 구매입찰 공고문과 계약특수조건에 제재 및 계약해지 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사후관리 철저
-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한 업체 및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 등
  -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14. 9월)」 활용

#### ▪ K-에듀과인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및 조회 방법

- K-에듀과인에서 계약서 작성 시 수의계약배제 업체 등록 및 조회  
학교회계>계약관리>계약업체관리>수의계약배제업체관리

- 다. 불량 식재료 납품업체(위탁업체) 처벌규정 준수 및 공개
  - 「학교급식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준수
  -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위반 등 제재 조치 내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 4. “학교급식 분야” 청렴도 개선

- 가. 2022년 청렴도 개선 계획
  - 중점 추진사항

-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계약 제한-지속) 식재료 구매과정의 비리요인 원천적 차단
- (급식관련 간담회·토론회 개최)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공정성·투명성 강화
- (급식관계자 연수) 공급업체, 관리자,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원 청렴·친절 연수 실시
- (불량업체 지도·점검 강화)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단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사후관리 강화
-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조사 가격 신뢰성 확보) 전문기관 시장조사 실시

### 3 식재료의 위생·안전성 확보

#### 1. 식재료 검수 철저

- 가. 식재료 구매요구서에 반드시 원산지, 품질등급 등 품질기준을 명시하여 검수 시 원산지, 품질등급 확인 등 안전과 품질에 중점을 두어 검수 철저
- 나. 영양교사, 영양사가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등 참여하에 복수 대면검수 실시
  - 영양교사, 영양사, 교직원, 학부모 등 복수검수 자체 연간계획 수립 이행
  - 식단작성 및 변경, 현품설명서 작성, 계약변경 및 검수일지 등 학교장 확인 강화
  - 검수일지에는 발주량에 따른 입고량, 품질상태(등급), 인증 또는 표시품에 대한 기록,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원산지, 납품 시 식품의 온도 등 항목 기재 철저
  - 일일 거래명세표에는 납품수량, 금액, 원산지, 인증 또는 표시품의 기록 등을 기재

####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검사

- 가. 농·축·수산물 등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조사는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전(前) 산지 출하 및 유통단계에서 사전적 검사방식으로 실시('13. 국정감사 지적사항)
  - ※ 산지 출하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 유통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지방식약청에서 실시
- 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하여 부적합 농산물인 경우 급식제공을 중단하고 식재료 납품업체에 즉시 반품·폐기 등 조치
- 다.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시 품질 및 안전이 의심되는 식재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기술훈련연구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원산지 또는 품질검사 의뢰

### 3. 축산물 납품 및 검수 철저

가. 쇠고기 및 돼지고기 구매 요구 시 냉장·냉동여부를 명확히 제시

나. 쇠고기 구매 시 용도에 맞게 혼합사용하는 다양한 부위를 계약서에 명시

- (예시) 국거리는 사태, 양지 등 특정부위만 명시하지 말고 사태, 양지, 전지, 우둔 등으로 부위를 확대해서 사용 요망

다. 축산물 검수 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제출받아 보관 및 납품내역 입력

- 대상: 국내산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 당일 납품 검수확인 내역 등록, 검수내역 인쇄(월 1회) 및 보관

: 축산물품질평가원(<https://www.ekape.or.kr/거래증명통합포털/공공급식검수>), 축산물 mam편한 서비스(앱)

- 부위별 중량 초과 수시 확인

⇒ 초과량 발생 시 납품업체에 근거 자료 요구 및 불시 유전자 검사 실시 등 관리 강화

⇒ 축산물 검수 시 원산지 및 품질등급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되는 식재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구·군 등 관계기관에 DNA 동일성 검사 의뢰

라. 축산물 이력번호 (확인) 표시 및 게시 의무화

-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 국내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 수입산 소고기, 돼지고기

※ 가공육, 양념육, 베이컨류, 부산물은 제외

- 게시방법: 게시판 또는 인터넷 게시

· 조리되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mam편한서비스’ QR코드 또는 URL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이력번호 조회 가능)

· 조리되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장소에 게시(식사 장소나 식당 입구 근처, 눈에 잘보이는 곳)

-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

-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확인 및 보관(3년)

□ 제도관련 문의사항 □

- 홈페이지: 국내산 축산물 이력제 [www.mtrace.go.kr](http://www.mtrace.go.kr)  
수입산 축산물 이력제 [www.meatwatch.go.kr](http://www.meatwatch.go.kr)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1577-2633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 1688-0026

마. 계란검수 철저(부적합 계란 공급 방지)

- 계란 표면에 표시(난각코드: 산란일,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가 있는 계란 사용

- 계란 적합 여부 확인

▪ 축산물평가원 거래증명통합포털-등급계란정보조회([www.ekape.or.kr/kapecp](http://www.ekape.or.kr/kapecp))

▪ 식품안전나라 농축수산물안전정보-달걀농장정보([www.foodsafetykorea.go.kr](http://www.foodsafetykorea.go.kr))

- “식용란 살충제 계란 검사결과 증명서” 필요 시 징구(계약서에 명시)

※ 「계란류 사용 관련 학교급식 안전관리 철저 안내」 (교육지원과-6376, '17. 8. 28.)

「계란 사용 안전관리 강화」 (교육지원과-8499, '17. 11. 13.)

※ 학교급식 뿐 아니라 “돌봄교실” 등에서도 계란 사용 시 상기 내용 준수토록 지도

## 바. 축산물 입찰(발주) 시 유의 사항

### □ 축산물 입찰(발주) 시 '제출서류' 명시 □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상 신청인과 납품업체가 동일한 경우
  - 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추가 발급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납품업체명, 부위, 중량 표시된 것)
- 포장처리업체에서 축산물 구입 후 납품할 경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상 신청인과 납품업체가 다른 경우)
  - 축산물 매수인(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납품업체명, 부위, 중량 표시된 것)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상 신청인과 납품업체와의 거래명세표
- 기타
  -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급 및 개체식별번호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일일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징구(「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12)

### □ 자격제한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을 준용하여 시행 □

- 행정안전부 질의답변(2018. 10월) <자격제한 가능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6)”에 의거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  
단, 제1장 제1절 “7-나-3)”에 의거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금지**”하고 있음

## 4. 식재료 납품업체(대표자) 대상 식품위생 및 건전성 교육 실시

- 근거 :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가. 식재료의 생산·유통·운반과정의 위생관리 강화
  - 오염된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었을 경우 식중독 사고와 직결되므로 교육청 차원의 납품업체(대표자) 교육으로 위생수준 및 인식 제고
- 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납품업체(대표자)의 건전성 및 책임의식 강화
  - 불량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 교육과 더불어 건전성과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연 1회 이상 실시)
  -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실시

## 4. 급식재료 시장조사 및 시장조사시스템 운영

### 1. 급식재료 시장조사 실시

- 가. 물가조사 전문 용역업체에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가격의 일관성 및 신뢰도 증대
- 나. 급식재료시장조사 T/F 협의회를 통한 조사품목 결정, 건의사항 반영 등 운영방향 개선

### 2. 「급식재료 시장조사시스템」 운영

- 가. 학교급식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급식재료 시장조사시스템 카테고리 사용
- 나. 학교 급식계획에 필요한 식재료 시장조사가격을 표준화 및 전산화
- 다. 급식재료 시장조사시스템을 통해 식재료별 시장조사가격 입력·조회 업무의 효율성 제고

## IV.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 ① 학교급식 영양관리

1. 건강 지향적이며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 강화
2. 학교급식 ‘영양표시제’ 실시 강화
3.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철저

### ② 학교급식 영양관리 실천 방안

1.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실천
2. 트랜스지방 함유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제공 최소화
3. 학교급식 주식 통곡물 급식 사용 권장



# IV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균형 잡힌 학교급식 제공을 통한 학생건강 증진
- 건강지향적인 영양관리로 학생의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 배양 및 자기건강 관리 역량 강화

## 1 학교급식 영양관리



### 「학교급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건강 지향적이며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 강화

###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준수

※ 202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반영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개정('21. 1. 30.시행)

- 영양관리 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으로 제공

### 나. 식단작성시 고려사항(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2항)

-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
- 곡류 및 채소류·과일류·어육류·콩류·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 사용
-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 과다 사용 제한
-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방법 활용
- 쇼트닝·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제공 최소화

### 다. 학교급식 식단작성 참고자료(한국교육개발원, '18. 2월)

- 학생의 기호도와 식재료의 중복 여부
- 식품의 형태나 썰어진 모양의 중복 여부
- 조리법 및 색상의 중복 여부
- 조리원의 조리기술, 요일 등 고려
- 식품의 주별, 월별 제공빈도 고려

## 2. 학교급식 ‘영양표시제’ 실시 강화

- 가. 학생들에게 영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자기 식생활 관리능력 함양
- 나. 영양량이 표시된 식단표는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간식단표는 식사장소(식생활관, 교실) 등에 게시

## 3.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철저



### 「학교급식법」 제16조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종류 등을 표시 및 공지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5차) 개정판」(’21. 1월, 교육부)

- 가.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공지 의무화(「학교급식법」 개정, ’13. 11. 23.)
  - 위반 시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은 징계, 위탁급식업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와 공지 및 표시방법(「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종류>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계,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권장)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⑲잣  
· 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중 식품 원재료는 의무적용,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식품등의 표시기준」 참조)

- (공지 및 표시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에 안내, 주간 식단표를 식사장소(식생활관, 교실) 등에 게시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제공하는 알레르기 정보 활용 시 학교에서는 제공식의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 후 안내
- 다.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 보호자 확인 통해 특정식품별 알레르기 유병학생 조사, 해당 학생에 대한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 등 관리 실시
  - ※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운영 매뉴얼 참조 : [학교급식정보센터(www.pen.go.kr)/자료실]
- 라.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운영학교 확대

## 1.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실천

## 가.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 수립

-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을 학교급식 운영계획 등에 반영·수립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학교별 계획 수립·이행 여부 확인

## 나.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실천

- 저염식단 제공 및 나트륨 섭취량 줄이기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염도계’ 구입 활용
  - ※ ‘국 자율의 날’ 운영 및 국 권고염도 0.6~0.7% 수준으로 단계적 저감화
- 학교급식용 김치는 「저염김치 프로세서(’17. 5. 4.)」 적용(권장)

## 다.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 실천

- 가공식품으로 인한 당류 섭취를 제한하고 설탕, 물엿 등 첨가당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 당류 저감화 추진
- 조리식품, 음료수, 과즙 등의 당도측정에 당도계 적극 이용 (권장)

## 2. 트랜스지방 함유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제공 최소화

가. 쇼트닝·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제공을 줄임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영양공급을 통한 건강증진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나라 > 건강·영양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고열량·저영양식품 알림에 참조

## 3. 학교급식 주식 통곡물 급식 사용 권장

가. (필요성) 비타민, 무기질 및 식이섬유 등이 풍부한 통곡물(현미 등) 사용 확대를 통한 학생들의 바른 영양공급을 통한 건강증진

[백미와 현미의 영양성분 (자료: 농촌진흥청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구분 (100g기준)	열량 (kcal)	탄수화물 (g)	단백질 (g)	지질 (g)	식이섬유 (g)	칼슘 (mg)	칼륨 (mg)	철 (mg)	비타민 B1(mg)	비타민 B2(mg)
백미	345	79.5	6.4	0.4	0.72	7	170	1.3	0.23	0.02
현미	310	76.2	9	1	2.92	10	289	1.7	0.35	0.06

※ 통곡물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섭취량이 부족한 ‘식이섬유, 칼슘’ 등이 백미에 비해 풍부

## 나. 학교급식 주식을 통곡물(0~5분도미)로 제공 권장

- 통곡물을 중심으로 한 식사 실천
- 통곡물 급식 홍보 및 식생활 교육 실시



## V. 영양교육 및 식생활 지도 강화

### ①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1.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2. 학교 식생활교육실 운영 등 특별활동 강화
3. 수요자 중심 식습관 개선 노력

### ②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1. 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2. 영양상담실 개설·운영

### ③ 학교급식 지속가능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교육

1. 음식쓰레기 줄이기 대책 수립·시행
2. 교육급식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홍보
3. 채식급식 운영 및 교육

### ④ 학교급식 운영 지원

1. 영양교사 배치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2. 학교급식연구회 등 연구조직 행·재정 지원 확대

### ⑤ 영양교육체험관 운영

1. 학교 현장과 연계한 체험형 영양교육시설 설치·운영
2. 영양교육체험관 프로그램





# 영양교육 및 식생활 지도 강화



-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평생 건강의 기틀 마련
- 편식교정 등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 1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

- 2006. 7월,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으로 식생활 지도와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규정
- 식품안전 및 영양 식생활 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부 훈령 제정('14. 2월)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에 안전·건강 교육 포함(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2022년도 교육부 주요정책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48, 2022. 1. 3.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 각급 학교의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활용(참고)
- 유·초·중·고 영양·식생활 교육 가이드라인 및 초등학교 교육자료 개발·안내('22. 1.~)

### 1.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 가. 「학교 교육활동 운영계획」에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계획' 반영 및 실시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 나트륨·당류 저감화, 불량식품 근절, 식중독 예방,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등에 관한 사항 반영, 월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월 2회 이상)
    -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에 안전·건강 교육 포함

범교과 학습주제인 안전·건강교육(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등)을 관련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지도

- ※ 학생 성장발달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건강 식생활교육을 위해 교육현황 및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한 단계별·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19.~)
- ※ 영양·식생활교육은 학교장 책임 하에 교육과정 등과 연계하여 강화(일부 학교에서 외부기관 위탁교육으로 학교교육과정과 중복 및 혼란 등 민원제기)

- 나. 담임교사 임장식사를 통한 밥상머리 교육, 매주 1회 이상 ‘잔반없는 날’ 운영 등 잔반 안남기기 교육, 학부모 대상 급식관련 정보제공
- 다. 급식현장을 생활교육의 장으로 활용, 보다 교육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식당’ 명칭을 ‘식생활교육관’ 등으로 변경, 영상장비 등 교육환경 마련
  - ※ (현행) ‘급식소’, ‘식당’→ (변경) ‘식생활교육관’, ‘식생활관’ 등
- 라.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 지도 등으로 아침 결식 해소 및 규칙적인 식습관 형성
  - 아침밥 먹기 영양수업 및 지도 확대 등으로 아침밥 먹기 습관화
- 마.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유해식품에 대한 교육·홍보
- 바.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 교육

## 2. 학교 식생활교육실 운영 등 특별활동 강화

- 가.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에 아늑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식생활교육실’ 구성
  - 학급별로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식생활 체험교육 실시
    - ※ 학교 식생활교육실 운영 매뉴얼 참조[학교급식정보센터([www.pen.go.kr](http://www.pen.go.kr))/자료실]
- 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식생활에 대한 관심제고 및 기초 조리 능력 배양
  - ※ 교육실적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의한 「학교급식일지」 등에 기록(입력)하여 3년간 보존(학교 급식일지 / [특기사항/비고]) 란에 입력
- 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 지정 학교급식 시범(연구)학교 운영 지원

## 3. 수요자 중심 식습관 개선 노력

- 가. 「채소·과일 DAY」 운영, 식생활 캠페인 등을 통한 편식 교정 노력
- 나. 「학교급식 포스터 공모전」 등을 통한 기호 위주 급식요구에 대한 자발적 성찰 및 공감대 형성
- 다. 「영양·식생활교육 체험한마당」 참여를 통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 의지 제고

# 2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 1. 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 가. 영양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 실시(상담일지 비치)
  - (대상) 비만·식품알레르기·편식·저체중·당뇨·고혈압 등 식사조절 필요 학생  
(필요시 학부모, 교직원 권장)
  - (상담방법) 집단상담, 특별상담, 사이버 상담 등
    - ※ 상담내용은 나이스-장학-상담업무에 등록(권장)
- 나. 영양·식생활 진단 시스템 활용(권장)
  - ※ 영양·식생활 진단 시스템 활용 매뉴얼 참조[학교급식정보센터([www.pen.go.kr](http://www.pen.go.kr))/자료실]

## 2. '영양상담실' 개설·운영

- 가. 급식관리실 및 학교 홈페이지 등에 '영양상담실' 개설·운영
- 나. 영양상담실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시 적정 면적 확보 노력

# 3 학교급식 지속가능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교육

## 1.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수립·시행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음식물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9호(2019. 7.)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 '19.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남은 음식물 돼지농가 이동 및 급여 금지 조치 (적용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1항1호 및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오염 우려물품)

가. (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실태 조사 및 실효성 있는 저감화 대책 수립·추진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여부 확인

나. (학교)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수립·시행

- 전처리 식재료 사용, 학생 기호도 조사·분석 및 적정량 조리·배식, 표준화된 조리레시피 적용,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잔반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 매주 1일 이상 “잔반 없는 날” 지정·운영, ‘국 없는 날’ 등을 통하여 잔반을 남기지 않는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방안 강구

-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거하여 발생량 최소화

※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지 말아야 하는 폐기물 종류 참고 [참고19]

-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계약 방식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개선하여 발생량 저감화 및 비용 절감 도모

## 2. 교육급식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홍보

- 가. 급식을 환경교육 등 식생활 실천 교육의 장으로 활용
- 나. 학교급식 잔반 줄이기에 대한 학생 의견수렴 및 참여 방안 강구
- 다. 편식교정 등 식사지도를 통한 음식물 남기지 않기 교육 실시, 학생 개인별 식사량 조절을 위하여 ‘음식조절대’ 및 ‘추가배식대’ 활용
- 라. 학교 홈페이지, 급식게시판 등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실시
- 마. 학교급식 연구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자료 및 교구 적극 활용

## 3. 채식급식 운영 및 교육

- 가. 생태와 환경 기후위기대응 교육과 연계한 급식 운영
- 나. 지역로컬푸드 사용 및 채식식단 제공 등 저탄소 생태교육 급식 운영
  - 월 2회 이상 채식급식(‘고기 없는 월요일’, ‘채식의 날’ 등) 확대 실시 권장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21.5.26.)**  
채식급식이란 식물성 식재료를 사용하여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교급식으로 유제품, 난제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채식급식 홍보 및 식생활 교육 실시
- 라. 학교채식급식 연구학교 운영 및 성과보고회 개최

# 4 학교급식 운영 지원

## 1. 영양교사 배치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가. 급식시설·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배치방안 강구(사립학교 포함)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
- 나. 신규 영양교사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 ※ 국가차원에서 신규 영양교사 연수 운영(‘16~’19년 종료)
- 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영양교사 및 영양사 대상 영양상담 등 전문교육 실시
- 라. 학교장 및 교감·교사, 행정직원 대상 연수과정에 “학교급식 운영 관리” 과정 반영

## 2. 학교급식연구회 등 연구조직 행·재정 지원 확대

- 가.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학교급식담당자 전문성 향상 및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 (운영방안) 지구별, 지회별, 전문동아리별, 교육부 및 부산미래교육원교육연구회별 전문화된 연구 수행으로 유기적이며 집단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
  - (운영내용) 식단, 급식운영 내실화 및 영양·식생활교육자료 등 현장 중심의 자료 개발 및 적용
- 나. 연구성과발표회 및 전시회, 자료집 편찬 등을 통한 결과 환류 지원
- 다. 연구회 활동에 기여한 자는 학교급식 표창 우선 추천

## 1. 학교 현장과 연계한 체험형 영양교육시설 설치·운영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관」 설립·개관(2019. 4. 3.)

나. 영양교육체험관 현황

-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로 217
- 시설현황

2층 (규모)	준비실 (0.5칸)	키친 스튜디오 (조리 교육실습실) (2.5칸)	키즈 쿠킹클래스 (1칸)	운영지원실 (1.5칸)	영양상담실 (1칸)	다목적실 (2.5칸)
1층 (규모)	영양체험실(4칸, 9실)		(중양홀)	한식관, 영양뮤지엄 (2칸)	영양 카페, 연수실 (2칸)	

※ 실외 체험장: 허브·녹차 텃밭, 기능성 텃밭, 건강 산책로 등 체험장 조성

## 2. 영양교육체험관 프로그램

가.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 주민, 가족

나. 신청방법: 영양교육체험관 홈페이지 이용(bnec.pen.go.kr)

다. 운영내용

- 학생
  - 교육과정 연계, 자유학기(년)제 동아리활동, 진로체험 연계 체험형 영양교육
  - ‘키친스튜디오 및 키즈쿠킹클래스’ 를 활용한 조리실습
  - ‘텃밭에서 식탁까지’ 등 기능성 텃밭 체험활동
  - ‘한식관’을 통한 우리 전통음식과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교육
  -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운영
  - 건강한 부산학생 만들기 영양캠프 운영
- 교직원: 학교관리자 대상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 향상 및 건강관리 능력 배양  
‘실내텃밭 만들기’ 및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직무연수
- 학부모·지역주민: 영양식생활 개선을 위한 건강음식 만들기 및 조리 체험 운영
- 가족: 안전하고 간편한 영양체험꾸러미 지원을 통한 영양교육 및 우리 전통 식문화 보급과 정착
- 온라인 맞춤형 영양상담
  - 초4~6학년 비만 및 식습관 개선이 필요한 학생 및 학부모 온·오프라인 영양 체험, 상담 활동
  - 온라인 식생활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영양진단 및 맞춤형 영양상담 제공
  - 영양상담 지원단 구성 운영
  - 영양상담전문가과정 직무연수 및 학교급식관계자 영양상담 연수 실시



## Ⅵ. 학교급식 행정지원 강화

### ① 학교급식비 관리

1. 학교급식 경비부담
2. 학교급식비 운용
3. 학교급식비 집행·관리
4. 학교급식 폐식용유 매각관리

### ② 학생급식비 지원

1. 학기중급식비 지원
2.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 ③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 확대

1.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 확대 노력
2.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 협조

### ④ 정부양곡 및 우유급식 지원

1. 학교급식용 정부양곡 공급
2. 학교 우유급식 운영

### ⑤ 학교급식 인력관리

1. 배치기준
2. 대체인력 관리
3. 인건비 지원
4. 학교급식관계자 탄력(유연)근무제 운영
5. 급식종사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 VI

## 학교급식 행정지원 강화



- 초·중·고등학생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 1 학교급식비 관리

「학교급식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학교급식 경비부담

#### 가. 학교급식비의 구성 및 부담 주체

구성	급식시설·설비비 (급식기구교체 등)	급식운영비			식품비
		급식시설·설비 유지비	급식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부담 주체	학교설립·경영자	학교설립·경영자	학교설립·경영자 또는 보호자	학교설립·경영자 또는 보호자	보호자
예산 편성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 학교급식비	학교운영비, 학교급식비	학교급식비

※ 학교급식비 : 교육비특별회계

#### 나. 사용범위

구분	내용	
학교급식비 사용불가	급식시설·설비비	조리실 바닥 시공비, 조리기기(밥솥, 보일러) 등 구입비
	급식시설· 설비유지비	냉장고, 야채절단기, 급식용 승강기의 유지보수, 식기세척기·냉장고 부품수리비, 압력용기 안전변 교체비용, 급식소 방역비, 승강기 및 보일러 관리비, 물탱크 청소비, 퇴비화 기계 유지비 등
	기타	보일러 유지보수 및 관리 물품비, 안전점검 검사비, 가스 검사비, 가스보험료, 설비 수리비, 조리기구 구입 및 수리비, 급식실 비품구입 및 수리비(살균램프, 유인살충등, 포충기, 우레탄 바퀴), 학생 소모품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2016년 학교급식 운영 감사지적사례”

※ 학교급식비는 급식종사자의 인건비 및 연료비 등으로 사용

- 학교급식 분야 감사 지적사례  
(2016년) □□ 학교는 수익자부담경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 급식기구 소모품(살균램프, 포충기, 유인살충등, 우레탄바퀴)을 구입하면서, 0회에 걸쳐 000천원을 집행함

## 2. 학교급식비 운용

### 가. 학생급식비

- 학생급식비 = 식품비 + 급식운영비(①+②+③)

- 식품비 :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확보
- 급식운영비 : 식품비를 제외한 운영비

\*참고 「2022학년도 학교급식비 집행 및 예산편성 관련 유의사항 알림」 (학교생활교육과-626, '22. 1.12.)

※ 급식운영비 1인 1식당 산출기초

① 급식종사자 인건비	=	$\frac{\text{급식종사자 연 급여액 기본급 총액} + \text{교육청지원분 제외한 연차수당}}{\text{급식학생수} \times \text{연 급식일수}}$
② 퇴직적립금 (사립)	=	$\frac{\text{급식종사자 당해 연도 퇴직적립금 총액}}{\text{급식학생수} \times \text{연 급식일수}}$
③ 연료비 등	=	$\frac{\text{소요금액(전년도 소요액 참고)}}{\text{급식학생수} \times \text{연 급식일수}}$

- 초등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유치원 급식비는 원아의 급식량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급식단가 이하로 조정 가능

### 나. 급식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급식비

- 교직원 급식비, 징수시기 및 환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정

- 교직원 부담급식비는 학생 1인 1식당 지원되는 급식비의 교육비 특별회계지원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우수농산물 지원금) + 추가 소요액 책정

※ 교직원 급식비를 학생급식비보다 적게 책정 금지(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교직원의 식단 및 식재료 등을 학생과 달리하여 위화감 조성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유의사항

교직원 급식은 학생과 동일하게 운영. 단, 교직원 급식을 달리 운영할 경우는 학생급식과 구분하여 별도 계획 및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경우에만 가능(교육지원과-7034, '15. 8. 18.)

※ 별도 교직원 급식비 책정 시 원가계산 등 정확한 산출근거가 필요하며, 「2015년 부산광역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 제29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 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야 함

- 학교급식 분야 감사 지적사례
  - (2014년) △△학교는 교직원 급식비 징수결정 시 학생급식비와 동일하게 “수업일수×단가”로 계산하여 징수하지 않고 일정금액 [45,000원('13. 3월 ~ '14. 2월), 48,000원('14. 3월~현재까지)]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학교 학교급식 운영계획의 환불규정(연속 5일 결석 시 일할 계산하여 환불)에 따르지 않고 실제 급식한 일 수 만큼 정산 처리하였음
  - (2016년) □□ 학교는 교직원 급식비를 “실제 급식일수×단가” 로 계산하여 사후 징수함

### 3. 학교급식비 집행·관리

- 가. 급식비는 당해 학년도에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월 또는 학년말에 식품비가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 ※ 매월 정산 권장,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는 목적 외 사용 금지
- 나. 학년 변동 전에는 반드시 정산 실시
- 다. 학년 말 잔액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식품비로 사용

- 무상급식비
  - 식재료 구매계약 시 학교급식 계획수립 학생수 기준으로 급식비 집행
- 수익자부담 급식비(조·석식)
  - 전학, 장기결석 등 급식 학생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 징수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급식을 제공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 급식비를 환불 하여야 함
  - 급식비 환불에 대한 항목, 절차, 금액(전액 또는 일부)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후 결정, 그 결과를 안내(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교직원 회의 등)

- 라. 식재료 물품대금 카드결제 지양 및 납품업체에 부담 전가 금지
  - 학교에서 식재료 대금을 카드로 결제(지급)할 경우 수수료가 납품업체에 부과되어, 이는 식재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므로 카드 결제 지양
- 마. 학교급식 관련 기부 요구, 계약 물품 외 추가물품 요구, 사은품·포인트·상품권 등 수령 일절 금지, 금품·향응 제공(받은)자 모두 엄중 처벌
  - 행정사무 감사 착안사항 지정하여 청렴성 제고
  - 비리 및 민원 발생 학교,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급식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 학교급식 분야 감사 지적사례
  - (2016년) □□ 학교는 00제품을 구매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거래함(☞ 직거래 가능 금액이더라도 특정업체 지속 거래 불가)
  - △△ 학교는 학사일정 및 급식인원의 변동 등으로 식재료 추가 또는 취소를 하면서 결제권자의 사전(긴급한 경우 사후) 결제 없이 매월 말 일괄 변경계약을 하여 대금을 지급함
- 국민권익위원회 학교급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우리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 (2017년) 식재료를 구매한 식품제조업체가 제공한 포인트 또는 상품권(00의 기프트카드) 등을 개인용으로 사용함

- 바. 급식 소모품비는 원활한 급식운영을 위하여 적정 예산 편성(학교운영비 예산 포함)
  - ※ 학생급식비에서 소모품비 사용 금지

#### 4. 조·석식 학생급식비 연체 및 미납자에 대한 교육적인 징수대책 강구

- 가. 담임교사의 관심을 제고하고 보호자 전화 상담 등을 통해 건전한 학교경영 차원에서 합리적인 급식비 징수방안 모색
- 나. 급식소 입구에 카드식별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불가피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학생들의 자존감 보호 대책 강구

#### 5. 학교급식 폐식용유 매각관리

- 가. 유통기한 초과 식용유나 산패식용유 또는 산가측정 결과 2.5이상인 식용유는 학교급식 조리에 재사용 금지
- 나. 폐식용유를 처분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시·군·구에 신고를 필한 업체와 계약하여 매각하되,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연간 단가 견적에 의한 매각관리 적극 권장
- 다. 폐식용유 매각 금액은 학교회계로 편입시켜 투명하게 관리하고, 학교급식소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용품 구입 등에 사용

## 2 학생급식비 지원

### 1. 학기중급식비 지원

가. 지원대상: 국·공·사립 유치원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

[표] 무상급식 추진경과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	국·사립		1학년	2학년	3학년
시행 시기	2022.3월	2014.3월	2018.3월	2017.3월	2019.3월	2020.3월	2020.9월

나. 급별 급식비 지원기준

- 유치원(1인당 지원금액): 1인 1식당 2,500원

※ 공동급식 초등학교와의 지원 단가 차액은 유아학비 지원금으로 충당

- 초등학교(1인당 지원금액) (2022. 4. 1.자 학생수 기준, 단위: 원)

학생수(명)	~300	301~500	501~600	601~800	801~1000	1001~
구분						
총액(①+②)	3,920	3,780	3,670	3,590	3,490	3,440
지원단가(①)	3,560	3,420	3,310	3,230	3,130	3,080
우수농산물(②)	360					

- 중학교(1인당 지원금액) (2022. 4. 1.자 학생수 기준, 단위: 원)

학생수(명)	~300	301~500	501~600	601~700	701~800	801~
구분						
지원단가	4,400	4,300	4,230	4,180	4,110	4,040

- 고등학교(1인당 지원금액)

(2022. 4. 1.자 학생수 기준, 단위: 원)

구 분 \ 학생수(명)	~400	401~500	501~600	601~800	801~
지원단가	4,730	4,540	4,410	4,330	4,280

다. 세부 지원기준

- 초·중·고 공동급식학교 급식비
  - 학생 수: 조리교 + 비조리교 재학생 수 기준
    - 300명 이하: 조리교, 비조리교 각 300원 지원
    - 300명 초과: 조리교, 비조리교 각 100원 지원
  - 중·고 공동급식학교의 중학교 급식비는 고등학교와 동일 단가 지원
- 학교급별 상황에 따른 지원단가
  - 학생 수 400명 이하이나 급식인원 400명 초과로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이 없는 학교
    - 초등학교: 3,590원
    - 중학교: 4,440원
- LPG·등유·경유 등 연료 사용 학교
  - 운영비 90원 추가 지원
  - 연도 중 지원 사유 소멸(도시가스 전환 등) 시에는 제외
- 위탁급식학교 지원단가
  - 운반위탁: 5,000원
  - 운영위탁: 급별·구간별 급식비에서 300원 추가(상한 5,000원)
- 개축 및 급식실 현대화 공사로 인한 위탁급식 계약 학교
  - 지원 단가: 5,000원
  - 적용 기간: 위탁급식 계약기간
  - ※ 초등학교의 경우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360원 포함해서 계약 가능(대가 지급 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 위탁 급식을 하지 않고 개별 도시락을 지참 할 경우 저소득층 자녀는 현물 지원(5,000원)
- 학교장 추천으로 대안학교에 위탁 재학 중인 학생
  - 대안학교의 학교별 급식비 단가로 지원(상한 5,000원)
- 가정, 시설, 병원 등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급식비 5,000원 현금 지원
  - ※ 근거: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3845('20.7.17.) 급식비 지원 권고
- 기타 협의 사항
  - 그 외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가 지원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해당 학교, 지원청 및 본청이 협의하여 급식비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 결정

라. 유의사항

- 무상급식비 지원 범위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므로 보호자에게 추가로 급식경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노력 (부족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에서 부담)

- 급식비 지원 제외
  - 학교행사(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시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을 하지 않을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정도시락 등)
- ※ 단, 급식실 현대화 등으로 인하여 학교급식 중단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된 급식운영방법 중 “외부운반위탁급식, 도시락업체”는 지원

## 2.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 가.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석식비 지원

- 지원대상: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생계·의료급여 대상학생
- 지원단가: 학교별 석식비 단가 지원

### 나.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결식우려 학생
- 지원단가: 1식 7,000원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중 신청
- 선정방법: 구·군에 설치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 및 지원
- ※ 학기중 평일 조·석식 및 방학중 조·중·석식비는 지자체에서 지원

## 3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 확대

### 1.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 확대 노력

- 가. 부산광역시, 자치구·군과의 교육행정협의회, 기관장 회의 등을 통한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확대 유도
- 나. 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개정 및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유도

### 2.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 협조

- 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재료 구매 협조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
  -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수입 농·축·수산물에 효과적 대처 가능
- 나.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구 분	개소일	공급지역	취급 품목
기장군 센터	2013. 9월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남구	친환경 농산물
강서구 센터	2014. 9월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 서구	
금정구 센터	2017. 6월	중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 4

## 정부양곡 및 우유급식 지원

## 1. 학교급식용 정부양곡 공급

- 가. 공급대상 : 교육감 및 교육장이 정부양곡 공급대상 학교로 지정한 급식학교  
(운반위탁급식학교 제외)
- 나. 공급기준 : 1인 1식 기준 초등학교 70g, 중학교 140g, 고등학교 150g
- 야간학습 등에 따라 1인 1일 2식으로 정부쌀 공급이 필요하다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한 고등학교의 경우는 1인 2식까지 공급 가능
  - 기숙사 설치 학교는 1인 1일 3식 기준 공급
  - 농어촌 중·고등학교, 체육학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 범위 내 추가 공급
  - 농어촌, 벽지지역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1인 1식당 100g 범위 내에서 학교장 신청에 의해 탄력적으로 공급
- 다. 공급가격 : 군·관수용 대비 ('10) 80% → ('11) 90% → ('12~'17) 100%
- 라. 정부양곡 공급절차
- 정부미 공급대상학교 지정 신청 【참고 5】 (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지원청)
  - 정부미 공급 협조 요청(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양곡 구입신청
  - 양곡구입대금 납부
  - 양곡구입신청 접수처리(담당공무원)
  - 양곡구입대금 납부 확인 처리(징수확인처리, 담당공무원)
  - 양곡인수도지시서 출력
  - 양곡인수도지시서를 지정 창고에 제출 및 양곡 인수
- 마.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준수(수확년도로부터 1년 이내의 쌀 사용)
- 바. 학교급식용 정부미 사용대장 비치 【참고 6】

## 2. 학교 우유급식 운영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에 따른 학교 우유급식 운영관리 및 우유급식 참여율 제고

## 5

## 학교급식 인력관리

## 1. 배치기준

- 가. 영양교사·영양사
- 학교급식법 제7조에 의거 학교 급식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를 갖춘 학교에 배치
  - 3식 제공 학교(기숙학교<sup>1)</sup>)에 영양교사 또는 부영양사 1명 추가 배치
  - 2식 제공 학교에 영양교사 1명 추가 배치 확대

1) 학교에서 운영·관리하는 경우

나. 조리종사자

- 조리사 : 학교급식법 제7조, 식품위생법 제51조에 의거 조리교에 배치
- 조리원 : 학교급별 급식인원수에 따라 배치하며 학교급식 여건에 따른 특수조건에 해당할 경우 추가 배치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조리사+조리원)**

- 급식인원 : 학생, 교직원 등 실제 급식 인원(유치원, 비조리교 인원 수 포함)

▪ 유치원

급식인원	~50	51~200	201~
조리사	1	1	1
조리원	.	1	2
계	1	2	3

※ 급식 시설·설비 기준에 충족하는 유치원에 한함

▪ 초등학교

급식인원	~120	121~300	301~600	601~780	781~960	961~1140	1141~1320	1321~1500	1501~1680	1681~1860	1861~2040
조리사	1	1	1	1	1	1	1	1	1	1	1
조리원	1	2	3	4	5	6	7	8	9	10	11
계	2	3	4	5	6	7	8	9	10	11	12

▪ 중학교·고등학교(1식)·특수학교

급식인원	~120	121~300	301~500	501~650	651~800	801~950	951~1090	1091~1230	1231~1370
조리사	1	1	1	1	1	1	1	1	1
조리원	1	2	3	4	5	6	7	8	9
계	2	3	4	5	6	7	8	9	10

▪ 고등학교(2식)

급식인원	~300	301~550	551~800	801~1020	1021~1240	1241~1460	1461~1680	1681~1900	1901~2120
조리사	1	1	1	1	1	1	1	1	1
조리원	2	3	4	5	6	7	8	9	10
계	3	4	5	6	7	8	9	10	11

※ 급식인원 = 중식인원+석식인원

▪ 고등학교(3식)

※ 고등학교(2식) + 조식인원 180명당 1명 추가 배치

- 1~180명: 1명, 181~360명: 2명, 361~540명: 3명, 541~720명: 4명, 721~900명: 5명

※ 기숙학교의 경우 '고등학교(3식)' 기준 적용

▪ 특수조건 (조리원 1인 추가 배치 - 인건비 전액 지원, 중복 적용 불가)

연번	특수조건
1	식당이 층을 달리하여 3개 이상인 식당배식교
2	식당이 층을 달리하여 2개 이상이고 교실배식 하는 병행배식교
3	교사동이 3개 이상이고 덤웨이터가 2개 이상인 교실배식교
4	37학급 이상 또는 급식인원 1,000명 이상인 교실배식교
5	초등학교 급식인원 301명~600명인 구간에 한해 급식실 면적이 조리종사직원 1명당 264㎡ 이상인 학교
6	3식교 중 중식 급식인원이 150명 이상이고, 조식 및 석식 급식인원이 중식 급식인원 대비 70% 이상인 학교

다. 채용 및 재배치

- (채용) 교육청에서 조리종사자 직접 채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단위학교에 배치
  - '20. 8. 31. 이전 결원 발생 시: 학교장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20. 8. 31.까지 계약)
  - '20. 9. 1. 이후 결원 발생 시: 관리부서와 협의(교육청 발령 가능 여부 확인)
  - 학교장은 급식종사자 채용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반드시 근로계약서 및 관련대장을 작성·비치(관련대장: 임금대장, 연차수당 사용 및 관리대장 등)
- (재배치) 조리종사자 과원(공립)의 경우 결원교에 재배치하여 고용 안정 추진
  - 단위학교에서는 급식 질 제고를 위해 식품비 확보를 고려하여 인력 충원 검토
  - 급식인원, 정·현원, 결원 등 파악하여 교육청으로 채용 승인 요청(정기, 수시)

2. 대체인력 관리

- 가. 급식종사자의 휴가 사용이나 결원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시 채용
- 나. 인력풀 활용 원칙, 인력풀에 적합한 근로자가 없을 시 학교 자체 채용

대체인력풀 조회(www.pen.go.kr)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새소식/채용·시험정보/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풀/급식지원

- 다. 병가, 연가, 특별휴가(출산대체) 등으로 30일 이상 결원시 발생하는 대체자로 학교에서 이중으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체인력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 계획'에 따라 관리과에서 총괄 편성, 그 외 경우 학교운영비에 편성

3. 인건비 지원

- 가. 배경 : 적정 식품비 확보 및 안정적인 인력 운영 환경 조성
- 나. 지원 기준

직종	지원 대상	지원 인원	지원 내용	
영양사	공·사립	1명	기본인건비, 처우개선수당	
부영양사	공·사립	1명	기본인건비, 처우개선수당	
조리사	공·사립	1명	기본인건비, 처우개선수당	
조리원	공·사립	정원 내 현원	공통	4대보험료, 연차수당, 퇴직금, 처우개선수당
			급식인원 400명 이하	기본급 추가 지원(1명)
			3식교	기본급 추가 지원(1명)
			특수조건	기본급 추가 지원(1명)
운전원	공립	1명	기본인건비, 처우개선수당	

- ※ 기본인건비: 기본급, 4대 보험료, 연차수당, 퇴직금
- ※ 퇴직금: [공립(무기계약자)]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및 관리, [사립] 예산(당해연도 금액) 지원
- ※ 조리원 기본급: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급식비(무상+수익자)에서 지급

4. 학교급식관계자 탄력(유연)근무제 운영

- 가. 대상: 영양사,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자
- 나. 내용: 식재료 대면 검수 등으로 다른 교직원보다 조기 출근하는 경우 학교장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sup>1)</sup>

## 5. 급식종사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 가. 소속감 및 업무에 대한 책임감·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용안정 추진
- 나. 급식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휴가·휴직 보장
  - 조리종사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애 등의 재해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지원
- 다. 직무의 중요도와 업무량, 석식포함 2식 제공, 기숙사 운영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 배치 및 교대근무 등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처우개선
- 라. 급식종사자 계약 등 업무처리에 있어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준수
- 마. 급식종사자의 노동강도 경감과 사고 예방을 위해 현대화된 조리기기 확충
- 바. 급식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사. 조리실 냉방시설 및 탈의실, 휴게실, 샤워장 등 환경개선 추진
- 아.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부여하는 등 탄력적 운영체계 마련으로 급식종사자의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보장
- 자. 급식관리실, 조리종사자 휴게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

1)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총무과-1638('12. 8. 23.), 「영양교사의 탄력적 근무시간제 허가 관련 사항 안내, 교원인사과-10412, '16. 8. 2.)

## VII. 위탁급식 운영관리

### ① 위탁급식 운영방식

### ② 위탁급식 운영일반

1. 일반사항
2. 학교급식 식단표 승인
3. 학교급식비 집행 상황 확인
4. 완제품 급식 승인
5. 학교급식담당교직원 지정
6. 단위학교 운반위탁급식 운영 관리
7. 운영위탁업체의 급식종사자 관리

### ③ 위탁급식업체 계약 및 학교급식비 관리

1. 객관적이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 공고
2. 업체 선정 및 계약
3. 학교급식비 집행

### ④ 일반 행정사항

1. 위탁급식 운영관리 투명성 확보 및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2. 위탁급식 관련 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확인
3. 위탁급식업체 계약사항 보고
4. 위탁급식 운영 시 유의사항



# VII

## 위탁급식 운영관리



- 지속적인 직영급식학교 전환으로 학교급식 개선
- 안전·위생 관리 강화와 계약의 투명성 확보

▪ 본 단원에서 위탁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내용 외에는 “직영급식 운영내용 준수”



###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관할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위탁급식 운영방식

▪ 계약 시 자격요건 확인 철저

구분	운영 방식
전부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내 급식시설 및 업무 전부를 운영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의거 “위탁급식 영업신고”</li> </ul> </li> <li>▪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해 교외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의거 “식품 제조·가공의 영업신고”</li> </ul> </li> </ul>
일부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재료 구매·검수는 학교가 담당</li> <li>▪ 조리작업·배식·세척 등 급식작업과정 일부업무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의거 “위탁급식 영업신고”</li> </ul> </li> </ul>

가. 위탁급식 학교 중 직영전환을 희망하고 여건이 가능한 경우 급식시설비 등을 적극 지원, 외부운반 위탁급식을 우선하여 개선

나. 학교급식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부분위탁 또는 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위탁급식 허용

– 특히, 학교에서 업무위탁을 추진할 경우는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 승인

※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 적용(법제처 유권해석, '15. 8. 21.)

–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학교의 이전 또는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 재난 발생(감염병,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직영급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다. 전부위탁 또는 조리·배식 및 세척업무만 위탁하는 부분위탁의 경우에도 급식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급식운영 내실화 및 급식만족도 제고에 노력

## 2 위탁급식 운영일반

### 1. 일반사항

- 가.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
- 나. 위탁급식은 재적학생에 대하여 희망급식 원칙으로 하되, 학생들의 급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 다. 급식비 총액을 맞추기 위해 강제 급식을 시행하여 학부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라. 학교와 위탁급식업체는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
- 마. 위탁급식 계약 시 학기 중간에 급식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2. 학교급식 식단표 승인

- 가. 학교장은 매월 급식개시 전에 위탁급식업체로부터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 식재료 공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
  - 학사일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식단변경 시 급식제공 전일까지 식단표, 영양량산출표, 식재료 공급계획서를 변경 승인하도록 함
- 나. 검토내용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별표 2] 및 제5조 제1항[별표 3]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에 적합 여부
  - 승인하지 않은 완제품 사용, 가공식품의 지나친 사용 여부 등

### 3. 학교급식비 집행 상황 확인

- 가. 학교장은 매월 위탁업체로부터 식재료 검수일지, 일일거래명세표, 공공요금 및 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학교급식비 집행
  - 식품비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위반 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 이행
    - ※ 식품비 비율 : 급식비 단가의 65% 이상(매월 정산 권장)
- 나. 학교장은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위탁급식업체의 급식비 집행상황을 연 2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4. 완제품 급식 승인

- 가. 완제품 사용 시 사전에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함
- 나.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완제품 사용을 가급적 제한

#### 5. 학교급식담당교직원 지정

- 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급식담당교직원” 지정
- 나. 학교급식담당교직원 역할
  -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여 생활교육, 환경교육 및 인성교육의 장으로서 학생의 건강증진과 자기건강 관리 능력 배양
  - 급식식단의 승인 및 개선, 식재료의 검수, 검식, 위생관리 등 급식운영 전반에 관한 학교 측 감독관으로 참여하여 그 사항을 기록·유지
  - 학교행사 등 급식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일정을 사전에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통보하고, 동료 교직원과 협조하여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 도모

#### 6. 단위학교 운반위탁급식 운영 관리

- 가. 학교급식담당교직원은 운반위탁 급식일지 작성 **【참고 2】**
- 나. 매월 1회 이상 급식공급업체에 대한 위생·안전점검 실시 **【참고 4】**
  - 학부모가 2명 이상 참여, “학교급식 운영계획” 이행 여부 확인 철저
  -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공급업체에게 시정 조치 요구 및 확인
- 다. 공급업체로부터 자가품질검사서 사본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징구
  - 근거 : 「식품위생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라. 업체 영양사, 조리원, 운전원, 운반요원 등 건강진단증 확인 및 사본 비치
  - ※ 6개월 마다 갱신, 기준일은 건강진단 결과서에 표시된 ‘검진일’

#### 7. 운영위탁업체의 급식종사자 관리

- 가. 「식품위생법」 제51조, 제52조에 의한 영양사와 조리사 배치
- 나.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종사자 적정 인력 배치
  -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등 학교급식 인력 배치
  - 근로계약서 작성·비치, 급식종사자에 대해 4대 보험 가입 후 연 2회 학교에 통보
  - 종사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 서비스 질 개선 등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교육 실시
  - 교육 목적상 학교 내 근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필요 시 학교장은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3 위탁급식업체 계약 및 학교급식비 관리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2조

위탁급식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관계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 한다.

#### 1. 객관적이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 공고

- 가. 학교 위탁급식업체 선정 시 관련 법규 준수
- 나. 모집공고 및 계약관련 사항을 교육청 및 학교홈페이지 공개

#### 2. 업체 선정 및 계약

- 가. 관련 법규 및 “학교별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업체 선정  
※ (현장방문) 위탁급식업체의 시설·설비, 안전·위생, 조리·공급, 직원관리 등을 확인

##### ▪ 위탁급식업체 선정기준(예시)

##### 1. 위탁업체의 “급식 운영계획”

- 급식비 적정단가 : 식품비, 운영비 외에 적정이윤과 직원 인력운용비 등 포함 여부
- 급식비의 구성 비율 : 식품비 비율, 운영비 비율
- 식단 및 급식의 질 : 반찬 수, 식재료 사용(국내산, 수입산 등)
- 급식전담직원 등 인력운영 계획
- 배식시간 및 방법
- 급식 위생·안전관리(조리실, 배송차량, 직원 개인위생 등) 계획
- 긴급사태(천재지변 등) 시 급식공급대책 등

##### 2. 업체의 급식운영 실적 및 계약이행 능력 등

※ 공급 가능 물량 초과 계약으로 인해 적정 시간에 배송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등으로 인함

#### 나. 학교급식비 책정

-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결정
- 급식 학생수, 학교여건, 지역실정, 물가변동 등 인상요인, 급식의 질 향상 고려
- 학생급식비는 부가세 면제(교직원 급식비는 제외)이므로 계약 시 산출내역서에 반영 여부 확인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학생급식비 '23. 12. 31.까지 부가세 면제

#### 다. 식품비 적정 검토

- 식품비 비율은 65% 이상(급식비 단가 중 식품비 단가를 계약서에 명시)  
※ 식품비=식재료 납품거래명세서(매월 정산하여 식품비 사용비율 확인 권장)
- 식품비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위반 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 이행
-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철저

라. 계약 시 검토 사항

- 계약기간은 회계연도 단위

※ 장기계약 기간 종료 후 부득이 연장을 해야 할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

(예: 회계연도 중간에 종료 된 경우: '18. 4. 10.~'19. 2. 28.)

- 계약기간 중 위탁급식 중단 사유 발생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 명시

※ 위탁급식운영 사유 소멸 즉시 직영전환 추진 예정

- 식중독 발생 및 부당한 급식운영 사항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계약해지,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요구 및 교육청(학교) 홈페이지 게시하여 다른 학교에 피해 확산 방지

- 학교급식 위생사고 등 발생 시 업체의 배상능력(음식물배상보험, 손해보험 가입 배상한도액 및 기간 등) 확인

- 계약 종료 시 위탁업체로부터 학교급식 관련 서류 인수 철저

- 위탁급식 학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급식시스템' 사용 의무화

※ 위탁급식 업체와의 계약 시에 NEIS '급식시스템' 사용을 조건으로 제시

-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이행 철저(추가)

마. 위탁급식업체에 부당한 비용 부담 금지

- 조리 등으로 학교급식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운반위탁, 도시락배달)에게 급식시설비, 시설 개보수비 등은 위탁급식업체 부담 금지

- 급식지원비, 각종 기부금, 학교행사 찬조금, 후원금 등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급식제공(운동부 무료급식, 교직원 아침간식 등) 등 부당한 요구 일절 금지

바. 급식운영 관련 전담기구 설치

- 투명하고 객관적인 학교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등 위해 학교급식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운영

※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기타 급식운영 관련 “00위원회”

- 학교급식 위생·안전 및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최종적인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

### 3. 학교급식비 집행

가. 징수 및 지급

- 학교급식비는 학교장이 징수하고 급식실시 후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지급요구에 의거 지출 내역을 검토 및 확인하여 지급

- 학생개인별로 매식을 하거나 업체가 직접 급식비 수납 금지

나. 학교급식비 관리 : 학교회계로 관리하고, 집행은 회계 관련 법규에 의해 처리

다. 전학, 장기결석 등 급식 학생 변동 사항 발생 시

- 학교는 급식공급업자에게 사전 통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 급식비 환불

- 급식비 환불에 대한 항목과 절차, 금액(전액 또는 일부)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환불규정은 학교급식 공급계약서 또는 특약사항에 명시

### 1. 위탁급식 운영관리 투명성 확보 및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 2. 위탁급식 관련 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확인

- 가. 식단표, 발주서, 학교급식일지, 식재료 검수일지, 일일거래명세표, 위생·안전점검 대장, 건강진단 결과서, 위생·안전교육 실시대장 등 비치
- 나. 위탁급식업체 변경 시 비치서류 일체를 이관 받아 학교에 3년간 보관

### 3. 위탁급식업체 계약사항 보고

- 가. (학교)
  - 위탁급식 계약사항 승인 요청 및 계약기간·운영형태 등의 변경 시(초·중·고·특수학교)
  - 계약(변경) 후 5일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 나. (교육지원청)
  - 학교에서 계약보고 받은 후 10일 이내 시교육청으로 보고 **【서식 10】**

### 4. 위탁급식 운영 시 유의사항

- 가. 현대화 등 급식시설 공사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외부운반 급식 시 운영 및 위생관리 철저
- 나. 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적정한 업체선정 및 계약
- 다. 위탁급식업체 불시점검 등 학교자체 위생관리 체계 마련

## [부 록]

[붙임 1] 석식 위탁운영에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

[붙임 2] 학교급식 운영 감사지적 사례

[붙임 3] 보고서식 및 참고서식

－ 보고서식

－ 참고서식

[Q/A] 질문과 답변



【붙임 1】 석식 위탁운영에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법제처-15-0563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5. 10. 15
안건명	수업일의 점심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p>• 질의요지</p> <p>「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학교급식 직영원칙”이라 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학교급식 직영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p> <p>• 질의배경</p> <p>민원인은 학교급식공급업자로 학교급식의 직영원칙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만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에서 모든 학교급식에 직영원칙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p> <p>• 회답</p> <p>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이 적용됩니다.</p> <p>• 이유</p> <p>「학교급식법」 제15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고,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 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직영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p> <p>먼저,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의</p>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하는 것입니다(제2조제1호).

그런데,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급식”을 그 목적과 대상자, 실시자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급식을 제공하는 시간대별로 즉,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평일과 토요일, 수업일과 수업일 외의 기간 등으로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은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이라면 그 급식이 언제 제공되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학교의 장이 원칙적으로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통상 초·중·고등학교에서 최소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하여는 직영원칙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직영원칙은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 20.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이유서 참조) 특별히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만 학교급식 직영원칙이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학교급식 직영원칙을 규정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학교급식 운영 감사지적 사례



지적사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2020학년도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 총7명 중 학생위원 3명을 한 번도 참석시키지 않고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급식 기본방향과 오븐기 등 급식기구 구입 건에 대해 심의함.</li> </ul>
<p>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소위원회구성안이 각 부서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이므로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 개별 연락하여 필요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라.’ 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급식소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함</li> </ul>
<p>급식비 지원금 업무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전출 학생의 급식비지원금 329,000원을 감액 처리하지 않고 지원금 처리하였고, 2019.12.23.자 전입학생의 전입처리를 누락하여 2020.3.1.자 전입생으로 등록하였으며, 2020년 전입 및 전출생 8명의 수납자 정보 등록을 누락함</li> </ul>

지적사항	내용
<p>학교급식 식재료 현품설명서 작성 부적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2020학년도 간장, 소스, 만두, 밀가루 등 학교급식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현품설명서에 3개 이하의 특정업체만 표시함</li> </ul>
<p>학교급식 운영비 집행 부적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비를 집행하면서 수익자부담경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 항목(급식실 프린터기 등 임대료, 급식관리 S/W시스템 렌탈료, 인터넷 이용료, 보일러 유지보수비, 급식실 방제비, 송강기 유지보수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수수료 등)을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지 않고, 수익자부담경비(학교급식비)로 지출함</li> </ul>
<p>입찰 및 계약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는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의 종류, 원산지, 품질상태 등 규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식재료 현품설명서에 4개 이상의 제품명을 표기하거나, 제품명을 지정하지 않고 규격·성분·품질기준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 업체명을 기재함</li> </ul>

## 보고서식 목차



[서식 1] 학교급식 위생관리 대책 추진상황 보고(학교).....	83
[서식 2] 학교급식 위생관리 대책 추진상황 보고(교육지원청).....	84
[서식 3]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및 영양상담실 운영 실적 보고(학교).....	86
[서식 4]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및 영양상담실 운영 실적 보고(교육지원청).....	87
[서식 5] 학교급식점검단 구성현황 보고(교육지원청).....	88
[서식 6] 학교급식점검단 등 활동실적 보고(교육지원청).....	88
[서식 7] 학교급식 실태 보고(학교, 교육지원청).....	89
[서식 8] 학교급식 개시(변경) 보고(학교).....	91
[서식 9] 학교급식실시현황 1, 2(교육지원청).....	92
[서식 10] 위탁급식 계약상황 보고(학교, 교육지원청).....	94
[서식 11] NON-GMO 식재료 사용현황 보고(학교, 교육지원청).....	95
[서식 12]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보고(학교, 교육지원청).....	96
[서식 13] ○○학교 일일 상황보고(학교, 교육지원청).....	98
[서식 14] 학교급식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학교, 교육지원청).....	99
[서식 15]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보고(학교).....	100
[서식 16]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보고(교육지원청).....	101

## 참고서식 목차



[참고 1] 공동급식 비조리교 급식일지.....	102
[참고 2] 운반위탁 급식일지.....	103
[참고 3] 학교급식 일일 위생관리 점검표.....	104
[참고 4] 운반위탁 급식공급업체 위생 점검표.....	105
[참고 5] 학교급식용 정부양곡 공급 신청서.....	106
[참고 6] 학교급식용 정부미 사용대장.....	107
[참고 7]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108
[참고 8]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10
[참고 9] 식재료 부적합품 확인서.....	112
[참고 10] 학교 식재료 검수 모니터링 기록지.....	113
[참고 11] 출입·검사 등 기록부.....	114
[참고 1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115
[참고 1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117
[참고 14]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119
[참고 15] 학교급식 관계자 위생교육 세부계획.....	120
[참고 16] 학교급식 관련 법규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	121
[참고 17] 학교급식 사고 발생 시 처분기준.....	123
[참고 18]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내용과 시행방법.....	126
[참고 19]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지 말아야 하는 폐기물 종류.....	129

# 학교급식 위생관리 대책 추진상황 보고

(            학교장)

## 1. 급식시설 개선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재원별		투자액(집행액)	사업내역
학교회계	교육청지원금		
	학교자체부담금		
학교발전기금			
계			

\* 교육청지원금: 목적사업비 및 통합사업운영비 모두 포함 작성

## 2. 학교급식 위생교육·연수실적

(단위 : 명)

구분	교직원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종사자	학부모 기타	계
교육연수 인원					

※ 작성요령

- 교육연수인원 = 1회 교육인원 × 횟수
- 교육연수실적 = 학교자체, 교육청, 외부기관  
(구청, 보건소, 영양사회, 조리사회, 학교급식연구회)등 에서 주관한 교육 및 유인물 교육
- 교직원 : HACCP 교육+유인물 교육 인원 등
- 영양교사 및 영양사 : 교육청 및 외부기관에서 주관한 교육 등
- 조리종사자(조리사 포함) : 학교자체, 교육청, 외부기관에서 주관한 교육 등
- 학부모 기타 : 급식위생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인원,  
학부모 총회·학교급식의 날·급식설명회 등에 참석한 인원

## 3. 학부모 식재료 검수 등 모니터링 참여현황

(단위 : 회, 명)

참여일수	참여횟수(회)	참여인원수(명)

※ 작성요령(기준 : '22. 3. ~ '23. 2)

- 참여일수 : 반기중 모니터링 일수(반기중 급식일수보다 같거나 작음)
- 참여횟수 : 중복산정 가능, 각 모니터링 대상 횟수
- 참여인원 : 각 모니터링 참여 총 인원 수  
예시) 1일 동안 ①검수모니터링(2명), ②조리과정 위생 모니터링 (4명)참여시  
참여일수 : 1일, 참여횟수 : 2회, 참여인원수 : 6명 기재

## 학교급식 위생관리 대책 추진상황 보고

(                    교육지원청)

1. 급식시설 개선 예산지원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개선 학교수					
예산지원액(천원)					

2. 위생·안전점검 실적(1학기)

구 분		점검학교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초등 학교	직영	학교수					
		비율(%)	100				
	위탁	학교수					
		비율(%)	100				
중학교	직영	학교수					
		비율(%)	100				
	위탁	학교수					
		비율(%)	100				
고등 학교	직영	학교수					
		비율(%)	100				
	위탁	학교수					
		비율(%)	100				
특수 학교	직영	학교수					
		비율(%)	100				
	위탁	학교수					
		비율(%)	100				
계	직영	학교수					
		비율(%)	100				
	위탁	학교수					
		비율(%)	100				

3. 학교급식 위생교육·연수실적

(단위 : 명)

구 분	교직원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종사원	식재료 공급업체	학부모기타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4. 학부모 식재료 검수 등 모니터링 참여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비 고
참여 학교수						관내 중학교수를 초과할 수 없음
참여 인원수						

※ 작성기준: 2022학년도('22. 3. 1. ~ '23. 2. 28.)

##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및 영양상담실 운영 실적 보고

(            학교장)

### 1. 급식연구(시범)학교 운영 및 영양·식생활교육 실적

급식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영양·식생활교육 현황(해당란에 0표)				비고
지정운영여부	지원액	관련교과	창의적체험활동	관련교과 + 창의적체험활동	미실시	
O, X						

※ 작성대상 : 초·중·고·특수학교(국·공·사립) 영양교사 배치교

※ 작성요령

- 급식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급식연구(시범)학교
- 영양·식생활교육 : 영양교사가 관련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월2회(연 평균) 이상 실시한 경우

\*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 미실시 학교 중 방과후 수업시간을 통해 월 2회(연평균) 이상 실시한 학교는 '비고'란에 기재

### 2. 학교 영양상담실 설치·운영 실적

학교 영양상담실 설치·운영(해당란에 0표)				비고
홈페이지 상담실	현장상담실	홈피 + 현장상담실	미운영	

※ 작성대상 : 전체학교

[근거 : 교육부 학교급식 정책 추진상황 보고]

#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및 영양상담실 운영 실적 보고

(                    교육지원청)

## 1. 급식연구(시범)학교 운영 및 영양·식생활교육 실적

급식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영양교사 배치학교 수	영양·식생활교육 현황(학교수)					비고
			관련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교과 + 창의적체험활동	미실시	계	
학교수	지원액							

※ 작성대상 : 초·중·고·특수학교(국·공·사립) 영양교사 배치교

※ 작성요령

- 급식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급식연구(시범)학교
- 영양·식생활교육 : 영양교사가 관련교과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월2회(연 평균) 이상 실시한 경우

\* 관련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교육 미실시 학교 중 방과후 수업시간을 통해 월 2회(연 평균) 이상 실시한 학교는 '비고'란에 기재

## 2. 학교 영양상담실 설치·운영 실적

전체학교수	학교 영양상담실 설치·운영(학교수)					비고
	홈페이지 상담실	현장상담실	홈피 + 현장상담실	미운영	계	
	(00.0%)	(00.0%)	(00.0%)	(00.0%)		

※ 작성대상 : 전체학교

[근거 : 교육부 학교급식 정책 추진상황 보고]

### 학교급식점검단 구성현황 보고

구 분	소 속	성명	성별	직업	전화번호(휴대폰)	비 고

※ 작성요령

- 구분 : 학부모, 전문가, 시민단체, 시·군·구 공무원, 영양교사, 영양사 등
- 제출파일형식 : 한글파일

### 학교급식점검단 등 활동실적 보고

점검명	점검일	학교명 (업소명)	점 검 대 상 수										간부직원		지적 사항	조치 사항	
			직영				위탁				운반 위탁 업체	식재료 납품 업체	기타	직			성명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학교 급식 점검단																	
간부 직원 특별 점검																	

※ 작성요령

- 점검명 : 학교급식점검단, 간부직원 학교급식소 특별점검 및 사전특별점검 등 교육지원청 단위 각종 점검활동 (정기위생안전점검 실적 제외, 점검명 추가 시 행 추가 작성)
- 점검일 : 셀 서식, 표시 형식, 사용자 정의 yyyy-mm-dd로 지정
- 점검일별 별도 작성
- 제출파일형식 : 엑셀파일



2. 급식인력 현황(직영조리교)

- ① 배식실무원(기타): 비고란에 기타 직종 표기
- ② 조리사, 조리원(정규직): 지방공무원(위생원) 등 해당

3. 급식 시설 현황

- ① 작성대상: 조리장 또는 식당 보유 학교
- ② 식당: 식당별로 구분하여 각 열에 개별 입력(위치: 본관1층, 별관2층 등)

4.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분리구매)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현황 제출

5. 제출방법: K에듀과인 자료집계시스템으로 22. 4. 15.(금)까지 제출

## 학교급식 개시(변경) 보고

일반현황	학교명		설립별		학교장		주소			
	최초 급식개시일		유형별		학급수		전화			
	재적학생수		교직원수		기타(명)		총계(명)			
운영방식	직영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공동조리교 <input type="checkbox"/> 공동비조리교(조리교명: )			<input type="checkbox"/> 공동관리교 <input type="checkbox"/> 공동관리대상교(관리교명: )				
	일부위탁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공동조리교 <input type="checkbox"/> 공동비조리교(조리교명: )			<input type="checkbox"/> 공동관리교 <input type="checkbox"/> 공동관리대상교(관리교명: )				
	전부위탁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공동조리교 <input type="checkbox"/> 공동비조리교(조리교명: )			<input type="checkbox"/> 외부운반(도시락급식)				
집단급식소 설치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일		영양사명(면허번호)			조리사명(면허번호)				
	년	월	일	( )			( )			
학교급식 위탁현황	위탁업체명		대표자명	영업신고번호	업종(식품군)	계약기간				
				제 호		( 년)				
배식장소	<input type="checkbox"/> 교실 <input type="checkbox"/> 식당		<input type="checkbox"/> 교실·식당 병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배식시간	<input type="checkbox"/> 단일시간급식(동시급식)			<input type="checkbox"/> 시차제급식						
우유급식대상	<input type="checkbox"/> 전체급식			<input type="checkbox"/> 희망급식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급수현황	구분	상수도(광역지방)	마을상수도	상수도, 지하수(혼용)	지하수					
	음용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조리용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운영현황	급식인원(명)	구분	학생	교직원	기타(유치원등)	계				
		본교인원수								
	급식단가(원)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등										
근무인력(명)	<input type="checkbox"/> 영양교사 <input type="checkbox"/> 영양사			조리사(면허소지자)			조리원			총계
	정규직	학교회계직	기타	정규직	학교회계직	기타	정규직	학교회계직	기타	
설치현황	구분	건축		설치연도	설치시 재원부담		금액(천원)	설치후 변경내역		
	조리장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증개축			<input type="checkbox"/> 교탁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식당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증개축			<input type="checkbox"/> 교탁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구조	구분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근철골콘크리트조		조적조	조립식		
	조리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식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급식설치현황	급식운반	<input type="checkbox"/> 덤웨어 <input type="checkbox"/> 화물용승강기 <input type="checkbox"/> 일반용승강기		설치연도	용량		kg	대수		
	조리장	면적(m <sup>2</sup> )	총면적(m <sup>2</sup> )		전처리실	조리실(장)	식기구세척실		식품보관실	
			소모품보관실		급식관리실	편의시설	보일러실		기타	
	식당	연료	<input type="checkbox"/> LNG <input type="checkbox"/> LPG <input type="checkbox"/> 경유 <input type="checkbox"/> 전기 <input type="checkbox"/> 혼용( , )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조시설	<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냉난방시설		<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기계기구(용량)		냉장·냉동고 (냉장 L)(냉동 L)		오븐기	냉방기	세척기	보온·보냉고 L			
식당	면적(m <sup>2</sup> )	식탁수/좌석수		/	석	손씻는시설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기타	하수처리	<input type="checkbox"/> 오수처리시설 <input type="checkbox"/> 관로연결		<input type="checkbox"/> 기타						
	유수분리	<input type="checkbox"/> 그리스트랩 설치 <input type="checkbox"/> 그리스트랩 미설치								
	폐기물	<input type="checkbox"/> 위탁처리 <input type="checkbox"/> 자가처리(잔반처리장치보유)		<input type="checkbox"/> 위탁·자가처리병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급식변경내역* 변경보고서 입력	급식변경(중단)일	구체적 사유 및 내용			급식개시시 예정일		비고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교육장) (인)

※ 보고일자 : 학교 급식개시 후 10일 이내, 변경보고서 - 매년 3. 5일까지(휴일일 경우 익월보고), 학교급식 변경 후 10일 이내



## 학 교 급 식 실 시 현 황 (2)

2. 학교급식예산 연간집행액(단위 : 천원)						3. 학교급식인력 및 학부모참여인원(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총계	구분		학교급별				총계	설립·운영별					총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영			위탁		
														국립	공립	사립	일부	전부	
시설설비비	교육비특별회계						영양교사	정규직											
	자치단체지원금						영양사	정규직											
	기타							학교회계직											
식품비	교육비특별회계						조리사	정규직											
	자치단체지원금							학교회계직											
	보호자부담금						조리원	정규직											
	기타							학교회계직											
운영비	시설·설비의유지비	교육비특별회계					총계	정규직											
		자치단체지원금						학교회계직											
		기타							기타										
	인건비	교육비특별회계						학부모참여인원(연인원)	정규직										
		자치단체지원금							학교회계직										
		보호자부담금							기타										
		기타							계										
	연료비, 소모품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4. 기타사항											
		자치단체지원금																	
		보호자부담금																	
		기타																	
	총 계	교육비특별회계																	
자치단체지원금																			
보호자부담금																			
기타																			
계																			
학교급식품 생산액																			

## 위탁급식 계약상황 보고

○○학교(교육지원청)

### 1. 학교현황

학 교 명	급식 형태	급식비단가(원)		급식 실시 학년	급 식 장 소		급 식 인 원					
		학 생	교직원		교실	식당 (좌석수)	학 생			교직원		
							재 적	급 식 조	중 석	총인원	급 식	
						( )						

※ 급식형태 : 운영위탁단독, 운영위탁조리, 운영위탁비조리, 운반위탁 중 기재

### 2. 계약업체 현황

대표자 성명		업 체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집단급식소 신고번호		계 약 기 간	년 월 ~ 년 월 까지	
영업허가번호		민자유치액	급 식 기 구	천원
			급식소시설	천원
			승 강 기	천원
			계	천원
급식비 중 단가 및 식품비 비율	% 원	급식전담직원	영 양 사	명
			조 리 사	명
			조리종사원	명
			계	명
영양사인적사항	성 명	소지자격(면허번호)	채용년월일	
음식물배상책임 보험가입액	원	식 단 구 성	식 찬	

### 3. 급식기구현황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원)	금 액	민자유치액

※ 첨부자료 : 위탁급식 계약서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https://www.foodsafetykorea.go.kr/ews>)에 계약상황 계약 후 5일 이내 업데이트

※ 보고일자학교- 계약 후 5일 이내, 학교에서 계약보고 받은 후 10일 이내 시교육청으로 보고

### NON-GMO 식재료 사용현황 보고

(단위 : 원, 명, 일)

품목	일 평균 급식인원(명)				6개월 급식일수	제품명	단량 (kg, L)	총 사용량 (kg, L)	총 지원금액	총 구매금액	공동조달제품 (O,X)
	학생	원아	교직원	계							
된장						kg					
국간장						L					
양조간장						L					
고추장						kg					
청국장						kg					
밀가루						kg					
쌀엿						kg					
전분(감자)						kg					
전분(고구마)						kg					
올리브유						L					
유채유						L					
해바라기유						L					
참기름						L					
순두부						kg					
경두부						kg					
연두부						kg					
토마토케첩						kg					
스위트콘						kg					
조미김(8절)											
조미김가루											
부침가루											
튀김가루											
총계											

※ 작성요령(엑셀로 작성)

- 일 평균 급식인원 : 일 평균 학생수, 원아수(유치원생 수), 교직원수
- 6개월 급식일수 : 6개월 전체 급식일수(예: 3~8월분은 3월+4월+5월+6월+7월+8월 급식일수)
- 총지원금액 : 일 평균 학생수×6개월 급식일수×130원("총계"란만 입력)
- 총구매금액 : NEIS상 6개월 사용량 조회 자료 품목별 총구매금액 입력
- NON-GMO 식재료 사용현황 보고 : 3~8월분 ⇒ '22. 9. 8.(목)까지, 9~2월분 ⇒ 2월 학년말 방학 전까지

##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보고

(’00. 00. 00. ○○학교, ○○교육청/ 작성자 : 직/성명/전화번호)

### <요약>

’22. 3. 14.(월), ○○도 ○○시 △△고등학교(공립, 직영)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명 발생

### 1. 학교 현황

학교명	설립구분	급식형태	학교규모		영양교사 및 영양사
			학생수	교직원수	
00학교	공립	직영/상수도	000	00	주아무개

### 2. 발생현황

- 인지일시 : ’22. 3. 14.(월) 10 : 30경
  - (인지상황) 3-1반 담임 000이 담당학급 학생 중 설사증상 학생이 2명 발생함에 따라 학교장에 보고
- 보건소 신고일시 : ’22. 3. 14.(월) 11 : 00경 △△보건소(신고자 : 교감 000)
  - 신고시점 기준(의심)환자 현황 : 총 11명 (학생 10명, 교직원 1명)
- 학교 조치내용
  - 학교에서 조치한 주요 내용(추가 환자 파악, 교내 소독 등)
    - ※ 학교자체 대책회의 등을 개최한 경우 회의 주요내용 및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요약

### 3. 역학조사 등 조치사항

- 현장방문 및 대책회의 참석자 : ○○교육지원청 식품위생주사보 김길동
- 역학조사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 (가검물 채취) 환자가검물 건, 환경가검물 건
  - (추정 감염경로 및 원인식품)
  - (급식 여부) 급식 중단 없음 / 0월 0일부터 0월 0일까지 급식 중단
  - (기타 중요 결정사항 등)

4. 환자 세부현황

- 사례 정의 :
- 학생 환자 현황('22. 3. 17.(목). 17시 기준)

구분	학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수							
환자수							

- 일일상황보고(작성예시)

구분	환자수(명)		치료중 환자수(명)				비고
	누적	신규	입원	입원	투약/자가	합계	
03월14일	10	10	1	4	3	8	발생인지일
03월15일	12	2	0	3	2	5	
03월16일	13	1	0	1	1	2	
03월17일	13	0	0	0	1	1	추가환자 없음

※ 매일 17시 기준으로 환자 및 치료 현황을 엑셀로 작성(별도서식 제공)하여 담당자 메일로 제출 / 2일 연속 추가환자 발생이 없으면 보고 종료

5. 참고사항

- 언론취재 :
- 기타 :

○○ 학교 일일 상황보고

구분	환자현황								치료현황				비고
	누적 (의심)환자수				신규 (의심)환자수				치료중 (의심)환자수				
	구토	설사	복통	합계	구토	설사	복통	합계	입원	통원	투약/자가	합계	
3월14일	1	4	3	8	1	4	3	8	1	4	3	8	발생인지일
3월15일	1	6(1)	4	11	0	2(1)	1	3	0	3	2(1)	5	조리사 1명
3월16일	1	7(1)	5	13	0	1	1	2	0	1	1	2	
3월17일	1	7(1)	5	13	0	0	0	0	0	0	1	1	추가환자 없음
3월18일	1	7(1)	5	13	0	0	0	0	0	0	0	0	모든 환자 완치
				0				0				0	
				0				0				0	
				0				0				0	

<작성요령>

1. 발생 인지 일부터 모든 환자가 완치된 날까지 작성(비고란에 표시, 작성 예시 참조)
2. 매일 오전 12시까지
3. 환자현황 표기 방법
  - 가. 구토 : 구토 환자 및 구토를 동반한 2개 이상의 증상이 보이는 환자
  - 나. 설사 : 설사 환자 및 설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구토에 표기)
  - 다. 복통 : 구토, 설사를 하지 않는 단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방역당국 역학조사 시 환례정의에서  
단순 복통은 제외한 경우 기입 생략)
4. 환자 중 교직원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셀에 괄호로 표기 / 괄호 밖의 숫자는 학생환자수와 교직원 환자수를 포함한 숫자임
5. 파일명은 "보고년월일6자리+ 시도명+일일상황보고" 로 할 것(예시 : 220318교육청일일상황보고)

##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

기관명 : ○○교육지원청(학교)

1. 발생개요
  - 학교명, 설립별, 급식형태, 소재지 등
  - 주요증세, 일자별 발병 및 치료현황 등
  - 학교의 인지시기,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일시
2. 급식실시 현황
  - 급식인원(학생, 교직원), 종사원수, 급식시간, 식단내용
  - 식재료납품업체 및 위생관리 현황 등
3. 주요 조치내용
  - 일자별, 기관별 주요조치 내용
    - 안전공제회 등의 보상내용, 관련업체 조치 및 관련자 문책 등 포함
4.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 식단 작성, 식재료검수, 종사자건강 및 위생상태, 조리작업과정 등 조사결과
  - 역학조사 설문조사, 보존식 및 환자가검물, 환경가검물 검사결과 등
  - 보건소(역학조사관)의 종합결론
5. 시사점 및 향후계획
  - 식중독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시사점
  - 식중독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

※ 보고시기 : 질병관리본부 등 역학조사당국 조사결과 최종통보 후 즉시 보고

##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보고

1. 처리방법 및 비용계산 방법 현황

학교명	처리방법			비용계산 방법			계약단가
	위탁업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기타	정액제	종량제	무상 처리	

- ※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 정액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관계없이 처리비용을 정액으로 계약하고 처리(법적용어는 아님)
- ※ 계약단가는 계약에 명시된 대로 작성 ⇒ 예시) 150원/kg (L당 단가는 kg당 단가로 변환하여 작성)

2. 처리량 및 처리 비용 현황(월별로 작성)

학교명	1일 평균 급식인원수 (명)	연간 급식 일수	총발생량(kg)			처리비용(천원)		
			전잔반	후잔반	계	전잔반	후잔반	계

- ※ 작성기준 : 2022학년도('22. 3. 2.(수) ~ '23. 2. 28.(화))
- ※ 1일 평균 급식인원수 : 조·중·석식을 포함한 1일 평균 급식인원수  
(공립유치원, 교직원, 비조리교, 2~3식 등 모든 급식인원 포함)
- ※ 학교명 : 조리교에서 비조리교 포함 입력
  - 전잔반 : 전처리쓰레기 / 동물 뼈, 채소 뿌리, 알껍질 등 일반쓰레기를 제외한 비가식 쓰레기 등
  - 후잔반 : 배식 후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보고

1. 처리방법 및 비용계산

구분	학교수	처리방법(학교수)				비용계산 방법(학교수)		
		위탁업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기타	합계	정액제	종량제	무상처리
초								
중								
고								
특								
계								

※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 정액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관계없이 처리비용을 정액으로 계약하고 처리 (법적용어 아님)

2. 처리량 및 처리 비용 현황

구분	학교수	1일 평균급식 인원수	연간 급식 일수	처리량(단위 : kg)			처리비용(단위 : 천원)		
				총 처리량	1교당평균 처리량	1인당 평균처리 량	총 처리비용	1교당 평균 처리비용	1인당 평균 처리비용
초									
중									
고									
특									
계									

※ 급식제공 인원수 : 조·중·석식을 포함한 1일 평균 급식인원수  
(공립유치원, 교직원, 비조리교, 2~3식 등 인원 포함)

※ 작성기준 : 2022학년도('22. 3. 2.(수) ~ '23. 2. 28.(화))

[참고 1]

## 공동급식 비조리교 급식일지

결	담당자				교 장
재					

□ 급식실시 현황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급식학생수 (급식실시학년)		명 ( ~ )					
급식품 운 반 위 생	도착시간	:	:	:	:	:	:
	배식시간	:	:	:	:	:	:
	운반차 위생상태	양호, 불량					
	급식품 포장상태	양호, 불량					
	배식기구 및 개별용기의 세척·위생상태	양호, 불량					
	운 반 원 위 생 상 태	양호, 불량					
검식 현황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 맛 발생여부, 1인당 분량의 적절성, 식단간 조화 등	양호, 불량					
기타 사항 (영양교육 실시 및 검식 등 에서 문제발생 시 처리 내용)							

※ 공동급식 조리교와 같은 장소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조리교의 급식일지로 갈음할 수 있음

[참고 2]

## 운반위탁 급식일지

결	담당자				교 장
재					

□ 급식실시 현황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급식학생수 (급식실시학년)		명 ( ~ )						
오늘의 식 단	식 단 명							
	1식당 영양량	에너지(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비타민A(R.E)						
		티아민(mg)						
		리보플라빈(mg)						
		비타민C(mg)						
		칼슘(mg)						
철분(mg)								
급식품 반 위 생	도착시간	:	:	:	:	:	:	
	배식시간	:	:	:	:	:	:	
	운반차 위생상태	양호, 불량						
	급식품 포장상태	양호, 불량						
	배식기구 및 개별용기의 세척·위생상태	양호, 불량						
	운 반 원 위생상태	양호, 불량						
검식 현황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 맛 발생여부, 1인당 분량의 적절성, 식단간 조화 등	양호, 불량						
보존식 관리		실시, 미실시						
기타 사항 (영양교육 실시 및 검식 등에서 문제발생시 처리내용)								

## 학교급식 일일 위생관리 점검표

결 재	담당자			교장

구분	점검 사항		점검결과							조치 사항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개인 위생 관리	복장 관리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앞치마 착용, 장신구 미착용 여부								
	건강 상태	식품취급자(조리종사자 포함) 건강상태								
식재료 검수 및 보관 관리	검수일지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보관 여부								
	유통기한	식재료의 유통기한 경과 확인								
	구분 보관	식품, 비식품(세척제, 소독제 등)을 구분 보관 여부								
	냉장고·냉동고	냉장고·냉동고 적정온도 여부								
조리 관리	세척 및 소독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제공하는 야채·과일을 소독할 경우에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 사용 및 충분한 행굼 여부								
	조리시 주의 사항	육류, 어류 등 동물성원료(돈까스, 만두, 떡갈비 등 분쇄육 등)를 가열 조리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힘 여부								
		해동은 위생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해동식품 재냉동 금지 확인								
	구분 사용	칼·도끼·어류·육류·채소류 용도별 구분 사용 여부								
배식 및 보존식 관리	배식	배식용 보관용기는 세척·소독·건조된 것을 사용하며 조리된 음식은 뚜껑 등을 덮어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관리								
	배식 후 관리	배식대에서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 여부								
	보존식	보존식 보관 및 관리기준(-18℃ 이하, 144시간 이상) 준수 여부								
시설 관리	시설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 소독시설, 환기시설 정상 작동 확인								
		배수구 청결관리 여부(조리장 바닥에 배수구 있는 경우)								
기타 특이사항 (불량 시 시정조치 내용 등 기재)										

※ 기록 방법 : 적합 ○, 미흡 △, 부적합 ×, 해당사항 없을 경우 - 표기, 부적합 시 조치 사항 기록

점검자	직	성명	(서명)
☞ 위탁급식학교의 경우			
업체(자가점검자	:     )	직	성명     (서명)
학교(확인점검자	:     )	직	성명     (서명)

[참고 4]

## 운반위탁 급식공급업체 위생 점검표

점검일자 :    년    월    일(※ 월 1회 이상)

결	담당자			교장
재				

업체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영업허가 종류 및 허가번호		
영 양 사 배치현황	성 명			조리종사자수	정규직	명	
	면허번호				임시직	명	
운반차량 (보내탑차)		대	운전원수	명			
조리 및 급식 설비 기구의 보유현황							
운영업체 지시 및 협조요청 사항							
급식소(조리실) 소 독 현 황		급식소(조리실)의 사용수					
소독일자	소독업체명	상 수 도	지 하 수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결과			
1회 최대 생산량		식					
현재 생산량		아침 :    식, 점심 :    식, 저녁 :    식 / 총 :    식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실 시 현 황	일 시	방 법	교 육 내 용				
위 생 점 검 사            항	종사자 개인위생 (건강진단 실시여부)	조리장 설비 및 기구위생 상태	조리과정중 위생관리 상태	식품의 취급·관리 상태	조리장 환경위생 상태	기 타	
기타 특이 사항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참고 5]

## 학교급식용 정부양곡 공급 신청서

1. 학교명 :            학교 (☎ 051 -        -        )  
가. 소재지 : 부산광역시        구        로        번지  
나. 사업자등록번호 :        -        -

### 2. 급식현황

총학생수	급식학생수	월소요량(kg)	급식일수	급식형태	비 고
명	명	kg	일		1인 1식 ( )g 기준

### 3. 영양교사, 영양사 등 배치현황

- ① 영양교사, 영양사 성명 :  
② 영양사 자격증 번호 : 제        호  
③ 전담직원 여부 : 유

### 4. 차액사용계획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첨부

년    월    일

학 교 장



[참고 7]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0. 4. 13.>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관	명칭				
	소재지				
	설립 주체	[ ]국영 [ ]공영 [ ]민영			
	급식소 종류	[ ]공공기관 [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사회복지시설 [ ]병원 [ ]청소년수련시설 [ ]산업체 [ ]기타			
	1일 급식인원 (명)	계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기타
1인당 평균 급식비(식품재료 비)					
종사자 수	계 명(영양사 명, 조리사 명, 기타 명)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도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운영	형태	[ ]직영 [ ]위탁			
	공동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위탁급식 (위탁한 경우만 해당)	업소 명칭(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종전 설비 유지 여부	수도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신규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또는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려는 경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m<sup>2</sup>(재활용품)]

신고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li> <li>3.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li> </ol>	수수료 2만8천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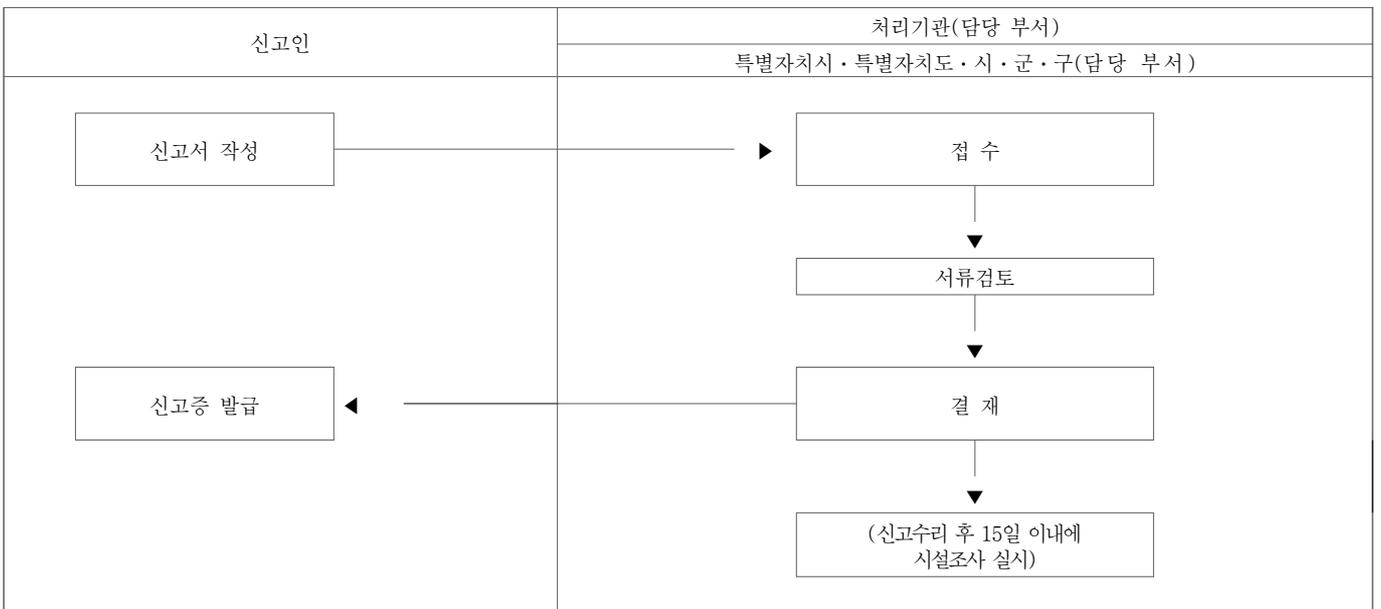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재 시 유의 사항 및 신고 후 준수사항**

1.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집단급식소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그 기관의 장을 적고, 생년월일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3. '종전 설비 유지 여부'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신고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기존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설치·운영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7.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종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참고 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21. 6. 30.>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영업	형 태 [ ]직영 [ ]위탁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위탁급식업체			
변경사유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소재지 변경	소재지 외의 변경	
신고인 제출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 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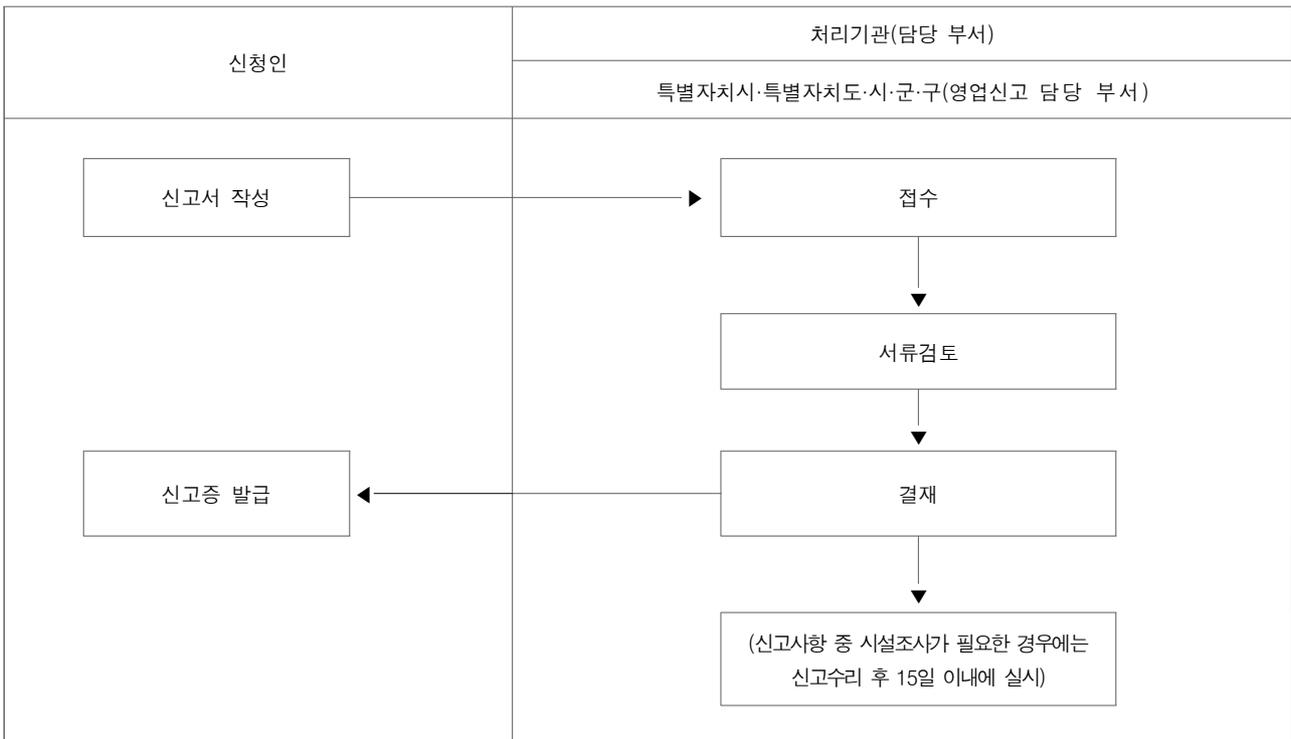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유의사항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처리 절차









[참고1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개정 2021. 9. 16.>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div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div>					
⑥ 사업장 규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식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kg/일)	부산물 발생량 (kg/일)	처리방법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kg/일)	위탁계약 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제1호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 ] 신고  
계획을 [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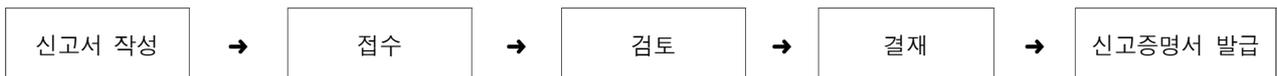
### 작성방법

-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처리절차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참고 1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 <개정 2016. 1. 21.>

(앞쪽)

(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신 : (업소명)

(대표자)

인

①업소명		②소재지	분류번호	(시·군·구)      (읍·면·동)	
③대표자		④전화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사업장 규모	[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식점 : 사업장 면적				m <sup>2</sup>
	[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m <sup>2</sup>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 사업장 면적				m <sup>2</sup>
	[ ] 호텔·콘도 : 객실 수				실
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실적					
자가처리			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kg/년)	부산물 발생량 (kg/년)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년)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년)	위탁계약 비용 (원/kg)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작성방법

1. ㉔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되, 우측에는 그 주소를 적습니다.
  2. ㉕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이 조사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1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개정 2018. 3. 30.>

( 앞 쪽 )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①자가처리내용								②자가재활용내용				③위탁재활용내용						보관량	결제						
		자가처리 방법	자가 처리 용량	자가 처리 누계	부산물처리					연월일	재활 용량	재활용 방법	누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재활용자	재활용 방법	위탁 재활용 누계								
					발생량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자	보관량																		

364mm×257 mm[백상지80g/m<sup>2</sup>(재활용품)]

[참고 15]

## 학교급식 관계자 위생교육 세부계획

실시기관	대 상 자	내 용	실시횟수	시 기
시교육청	교육청 점검요원	평가척도협의회	연 2회	2월, 8월
	초·중·고·특수학교장(감)	회의 및 장학협의시	연 1회 이상	연중
	영양교사·영양사	직무연수	연 1회 이상	2월
	학교급식점검단	전문교육	연 1회	3월
	식재료 공급업체	위생, 청렴교육	연 1회 이상	연중
교육지원청	초·중·고·특수학교장(감)	회의 및 장학협의시	연 1회 이상	연중
	조리원, 운전원, 조리사(위생원 포함)	직무연수	연 1회	연중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	전문교육	연 1회	연중
학교장	학생, 교직원, 학부모봉사자	가정통신, 직접교육, 게시판 등	수시	연중
	조리사, 조리원	위생교육	월 1회 매일	매월 매 급식전
(사)한국식품공업협회 (위탁)	집단급식소 대표자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위임가능)	식품 위생교육	연 1회	연중
(사)대한영양사협회 (위탁)	영양교사·영양사	식품 위생교육	2년마다 1회	연중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위탁)	조리사	식품 위생교육	2년마다 1회	연중

[참고 16]

## 학교급식 관련 법규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

▪ 대상 : 집단급식소

내 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에 대한 기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 미 준수</li> <li>-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li> <li>-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li> <li>- 기계·기구 청결관리 및 칼·도마 구분사용 미실시</li> </ul> </li> </ul>	식품위생법 제3조, 제88조, 제101조, 시행령 67조 별표2,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시행규칙 제100조 별표27	과태료 30만원, 100만원  과태료 30만원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진단 미실시</li> </ul>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01조, 시행령 제67조 별표2	과태료 20~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생교육 미실시</li> </ul>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01조, 시행령 제67조 별표2	과태료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발생 미보고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li> </ul>	식품위생법 제86조, 제101조, 시행령 제67조 별표2	과태료 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및 그 밖의 위생에 관한 중대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때</li> </ul>	식품위생법 제80조 제1항, 제88조 제2항, 제101조, 시행령 제67조 별표2	영양사, 조리사 : 업무정지 월~면허취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 과태료 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 계약한 사항이외 영업행위</li> </ul>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10. 나. 위탁급식업자의 준수사항의 위반]	1차 : 영업정지 15일 2차 : 영업정지 1월 3차 : 영업정지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나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해 사용한 경우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                                  과태료 1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li> <li>- 전 항목 검사 : 2년마다</li> <li>※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                                      과태료 50만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존식 미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li> <li>※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                                      과태료 300만원</li> </ul> </li> </ul>		1차 : 영업정지 7일 2차 : 영업정지 15일 3차 : 영업정지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li> </ul>	식품위생법 제74조, 시행령 제67조 별표2	과태료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li> </ul>	식품위생법 제88조, 시행령 제67조 별표2	과태료 100만원

내 용	근거법령	처분사항
•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 원산지 미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8조, 시행령 제3조제5항, 제10조 별표2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조리사(면허증소지자)를 두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제51조, 제96조,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1차 :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7일 3차 : 영업정지 15일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할 수 있음
• 방역기간 미준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83조, 시행령 제24조	100만원이하 과태료
• 액화천연가스(LNG) 정기검사 미실시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제51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액화석유가스(LPG) 정기검사 미실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73조	200만원 이하 벌금
• 덤웨이트 정기점검 미실시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 제80조, 시행규칙 제54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검사대상기기(압력용기) 검사 미실시 ※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2010. 10. 21.) 제35조에 따라 취사기는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면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73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검사대상기기 조종사 선·해임 신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75조	1천만원 이하 벌금

▪ 대상 : 운반위탁급식학교

내 용	근거법령	처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제조가공업(‘즉석섭취식품’에 해당) : 6개월마다 1회이상</li> <li>- 자가품질검사기록서 2년간 보관</li> </ul> </li> </ul>	식품위생법 제31조, 제97조, 시행규칙 제31조 별표12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반위탁 학교급식 공급업자 영업허가 미 보고</li> </ul>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67조 별표2	과태료 200만원

※ 위에 명시한 각 항목별, 내용별 위반시 조치사항(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학교급식법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및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학교급식법 제23조 내지 제25조에 규정된 벌칙규정을 적용함

[참고17]

## 학교급식 사고 발생 시 처분기준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위반행위	처분기준(최근 3년 이내)		
	1회	2회	3회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원인균 검출 고의성이 있는 경우	중징계 의결요구	중징계 의결요구	중징계 의결요구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원인균 검출 고의성이 없는 경우	경고, 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중징계 의결요구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원인균 불검출	시정	주의	경고

※ 위 표에 명시한 내용은 직영급식학교에 적용하며, 위탁급식학교의 경우는 식중독 원인균 검출시 관리자 및 담당자 경고, 불검출시 관리자 및 담당자 시정, 주의

나. 학교급식 관련 계약상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처분기준(최근 3년 이내)		
	1회	2회	3회
학교급식 관련 계약상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한 자	경징계 의결요구	중징계 의결요구	중징계 의결요구

다. 학교급식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 반 행 위	처분기준(최근 3년 이내)		
	1회	2회	3회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 2)	주의	경고	경징계의결요구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 3)	주의	경고	경징계의결요구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 4)	주의	경고	경징계의결요구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16조 1,2호)	주의	경고	경징계의결요구

라.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자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마. 위생관리 관련 공통기준

구분	처분항목(내용)		처분기준		비고
			관련자	처분기준	
공 통 기 준	1. 집단환자 발생(신고) 소홀 * 2명 이상의 동일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증세 환자 발생 사실 인지 시	① 환자발생 인지 후 3시간 이내 미보고	관리자	주의	* 인지도점 -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두통 등 식중독 증세의 환자 2명 이상 발생시 학교자체 조사 후 동일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증세 환자 2명이상으로 인지된 시간
			담당자	주의	
		② 환자발생 인지 24시간 이후에 보고(신고)	관리자	경고	
			담당자	경고	
		③ 환자발생 인지 후 은폐축소 미보고(신고)	관리자	경징계	
			담당자	중징계	
	2. 보존식 미보관 또는 훼손 등 관리소홀		관리자	경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가중 처분
			담당자	징계	
	3. 음용수 위생관리 소홀		관리자	주의	균 검출 시 징계 처분
			담당자	주의, 경고	

① 관리자는 학교의 장, 담당자는 사무분장에 의한 영양(교)사 또는 급식담당교직원

② 관련자는 1년 이내에, 위탁업자·식재료 납품업자는 계약기간 내 위생사고 재발시 가중 처분

③ 중복시는 가중 처분할 수 있으며, 관련자의 업무처리 정황 등을 참작하여 조정적용 가능

※ 위에 명시한 처분항목(내용)별 관련자 처분기준과는 별도로 「학교급식법」 제2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함.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결과 처분기준

지 적 내 용	학교(직영, 위탁)		위탁급식 업체(업자)	비 고
	학 교 장	담당자(관련자)		
1. 무표시 제품(표시기준위반) 보관 및 사용, 허위표시	1회 :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2회 : 경징계	1회 : 경고 2회 : 계약해지	- 반품 또는 폐기 - 처분청에 통보 - 계약서에 명시
2.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1회 :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2회 : 경징계	1회 : 경고 2회 : 계약해지	- 반품 또는 폐기 - 처분청에 통보 - 계약서에 명시
3. 영양사 및 조리사 미고용(미배치)	1회 :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2회 : 계약해지	- 시정결과 보고 - 계약서에 명시
4. 급식시설 정기 방역소독 미실시	1회 : 주의 2회 : 경고	1회 :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2회 : 계약해지	- 시정결과 보고 - 계약서에 명시
5. 집단급식소 무신고 (위탁급식영업)	주의	경고	(계약해지)	- 시정결과 보고 - 계약서에 명시
6.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주의	경고	경고	- 시정결과 보고
7. 보존식 미보존	1회 :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2회 : 경징계	1회 : 주의 2회 : 경고 3회 : 계약해지	- 계약서에 명시
8. 세균검사결과 양성 (균검출)	1회 : 시정 2회 : 주의 3회 : 경고	1회 : 시정 2회 : 주의 3회 : 경고	1회 : 시정 2회 : 주의 3회 : 경고	- 시정결과 보고 - 재검 2개월내
9. 급식위생·안전점검 평가결과 E등급 (60점미만)	1회 : 시정 2회 : 주의 3회 : 경고	1회 : 시정 2회 : 주의 3회 : 경고	1회 : 시정 2회 : 주의 3회 : 경고	- 시정결과 보고 - 재검 2개월내

※ 1~7번 항목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서 2이상 중복 또는 반복될 경우 가중처분 가능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내용과 시행방법

### 1. 교육내용

- 가. 어린이 기호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안전과 영양,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식품위생, 급식안전, 영양관리, 식중독 예방,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영양량 표시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관련교육 및 홍보
- 나. 불량식품 식별요령 및 안 사먹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학생 지도
- 다.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 시정, 질병예방을 위한 저체중, 성장 부진, 빈혈, 과체중, 비만학생 등에 대한 영양교육
- 라. 학생들에 대한 위생적인 배식관리와 편식교정, 식사예절 등 급식지도, 잔반 안남기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

### 2. 시행방법

- 가. 교육내용과 교육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월별 교육활동 추진계획은 학교장이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나. 교육실적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의한 “학교급식일지” 등에 기록(입력)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근거 : 영양교사 교직수당가산금 지급 규정, 교육부 훈령 제198호, 2017. 1. 1.)

(예시)

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추진 계획

### 1. 목 적

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여 학생 평생 건강 기틀을 마련한다.

나. 학생들이 자기 건강관리 및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 영양 관련 질병을 예방한다.

다.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학교에 건전한 식문화를 확산한다.

### 2. 방 침

가.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월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홍보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 「식생활교육 지원법」 제26조에서는 학교에서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도록 규정

나.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실정에 적합한 교육 시간을 확보한다.

다. 학습목표는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의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학년별 또는 교과별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교육 내용을 체계화한다.

라. 또한,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급식게시판, 영양상담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학생 지도 효과를 높이고 가정과 연계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교육 실적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에 의한 ‘학교급식일지’ 등에 기록(입력)하여 3년간 보존한다.

교육영역	교육내용	시기	대상
학교급식	학교급식 홍보, 영양교육상담실 이용안내	3월	교직원 학부모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식생활 관리	식품위생, 급식안전, 식중독 예방 교육	3~4월	1-6학년
	위생적인 배식관리, 편식교정, 식사예절 등 급식지도	연중	1-6학년
	영양량 표시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교육	5월	1-6학년
	영양소와 체내기능 교육	연중	1-6학년
	비만관리를 위한 바른 식습관 교육	연중	1-6학년
	저나트륨, 저당, 저트랜스지방 섭취 교육	연중	1-6학년
	저체중, 과체중, 빈혈, 성장부진 등 질병 예방 교육	6월	4-6학년
식품안전 및 식품선택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및 부정불량 식품의 안전과 영양교육	7월	1-6학년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안전과 영양교육	연중	1-6학년
환경친화적인 바람직한 식생활 실천	잔반안남기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연중	1-6학년
	잔반 없는 날 운영 등	연중	1-6학년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발전 및 식량 생산·소비	전통음식의 날, 절기음식의 날 등 다양한 식단 제공, 한국 전통식문화 교육	연중	지원학생
	식량 생산, 소비 교육	연중	지원학생
	송편 만들기 실습, 김치 담그기 실습	9-11월	1-6학년
	학교 텃밭 가꾸기 체험, 농촌그린투어	연중	지원학생
영양교육상담실 운영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 시정, 질병예방을 위한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비만학생 등에 대한 영양교육	연중	1-6학년
열린 학교급식 운영	학부모 검수 및 모니터링 운영	연중	학부모
	학교급식 공개의 날, 학부모 요리 강좌	6월	학부모

※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교육시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4. 기대 효과

- 가. 성장기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자기 식생활 관리능력을 함양한다.
- 나. 학교 영양·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 건강 증진을 실현한다.
- 다. 다양한 영양·식생활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참고 19]

##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지 말아야 하는 폐기물 종류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멍게 등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과일류	복숭아, 자두,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호두, 밤, 땅콩,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채소류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알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별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 I. 학교급식(식재료, 위탁) 납품업체 자격조건

1. 학교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기 위한 자격조건
2. 식육포장처리업 면허를 소유한 자가 포장된 닭·오리 등의 가공류를 다른 업체로부터 받아서 학교에 납품하는 것이 가능한가?
3.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납품하기 위한 자격조건
4. A업체와 식재료 납품계약을 하였는데 B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납품 가능 여부
5. (위탁급식) 업체 자격조건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가?
8.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에 관한 사항 중 비경쟁 대상 품목인 제품 구매는?
9.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 방법

### II. 학교급식 계약 관련

10.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시행 후 「계약법」 등 법령이 변경된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11.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특정업체 2곳만지정하여 견적서를 받아도 되는가?
12. 식재료 납품계약 이행 중 “부정당제재”를 받은 A업체와 계약해지 여부
13.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정상적인 납품이 어려운 경우(부도 등)
14. 계약 이행 중도 해지 시 차 순위업체와 반드시 해야 하는가?
15. 차 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나?
16.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배제 업체”비교
17.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18. 입찰 공고 시 “추정가격 2천만원”이란
19. “추정가격 2천만원(기초금액 2천2백만원)”의 중요성
20. 계약의 이행 중 불가항력(태풍, 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부담은?
21. 식재료 등의 수량 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22. 대금청구권 채권양도 양수 가능한가?
23. 식재료 산출내역서 공개는 의무인가?
24. 계약 기간 중 계약업체 대표가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 진행은?



### Ⅲ. 학교급식실 현대화 및 위탁급식 관련

25. 학교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 시 “급식기구 설치 업체” 선정을 학교별 “00 위원회” 해야 하는지?
26. 급식기구 선정을 위한 “00 위원회” 녹취 보존 기간이 5년으로 길다. 보존 기간을 줄일 수는 없는가?
27. 위탁급식 업체 계약기간은?
28. 위탁급식 업체와의 계약 시 NEIS ‘급식시스템’사용을 조건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식실 현대화로 인한 일시적인 운반 위탁 시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29. 현대화 공사로 인해 위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비 360원을 포함해서 계약이 가능한지?

### Ⅳ. 기타

30. 학교급식종사자 병가 및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를 학교급식비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31. 학교에서 학예회를 학교가 아닌 타 기관 시설에서 실시할 경우 급식비로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제공할 수 있는지?
32. 교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급식을 하지 않은 날에 대한 급식비 환불 요구 시 처리 방법?
33. 학교급식소에서 일부 학생을 위한 대체식을 제공하는 경우 보존식을 보관해야 하나요?
34. 학교장 승인 하에 학교 행사(축제, 체육대회 등)에 학부모회(단체)에서 전교생에게 간식을 제공할 경우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나요?
35. 유찰 2회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 기초금액 변경 가능한가(조달청 유권해석 인용, 2017. 5. 25.)



## 1. 학교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기 위한 자격조건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업체
  - 식품소분·판매업 신고 업체
    - ※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 식품(축산물)제조·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직접 생산한 식품을 학교(집단급식소)와 직접 계약하여 판매(대행 제외)
  - 축산물 판매업 신고 업체
    - ※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7호에 의한
  - ‘농업인’과 ‘어업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농·수산물)을 학교(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대행 제외)
  - 상기 시행령 근거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등이 아니면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농어업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2. 식육포장처리업 면허를 소유한 자가 포장된 닭·오리 등의 가금류를 다른 업체로 부터 받아서 학교에 납품하는 것이 가능한가?

- 불가능함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자로, 닭·오리를 직접 포장·판매하거나, 부위별로 절단하여 포장·판매는 가능하나,
  - 타 업체로부터 포장된 것을 받아 판매하는 것은 “축산물판매업”신고자

3.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납품하기 위한 자격조건

- 포장을 해체하여 소분 및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취급자 인증” 필요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한 납품업체가 친환경농산물을 소분하지 않고 포장 상태 그대로 납품할 경우

4. A업체와 식재료 납품계약을 하였는데 B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납품 가능 여부

- 가능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거
- I -1. 자격과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보유한 “B”업체와 차량 이용에 대해 적법한 계약을 하였을 경우
- 단, 입찰 공고 및 계약 시 “업체 자가 차량 이용”으로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 차량만 이용” 하거나 “학교의 사전 동의” 받아야 함
  - ※ 이 경우, 법규 상 가능한 사항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찰 공고 시” 입찰참여 업체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5. (위탁급식) 업체 자격조건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 운반위탁 : 학교 밖에서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의거 식품을 제조·가공 영업신고

- 운영위탁 :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의거 위탁급식 영업신고

- 일부위탁 :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의거 위탁급식 영업신고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고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 수시로 품목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수

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된 제품 구매 시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 특히, 김치류는 분리 구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 구매를 하여야 함
    - ☞ 우리교육청 청렴도 제고 방안에 따라 수의계약 및 지명계약 불가
- 하지만,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의 특성 상 빵류, 잼류, 조미김(맛김), 통조림 등은 단품으로 별도 구매가 어려우므로 별도 지침 시행 전까지 타 제품과 일괄 구매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중기청에서는 별도 구매하는 것을 장려함)
- 입찰공고문에 “참가자격” 및 “직접생산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8.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에 관한 사항 중 비경쟁 대상 품목인 제품 구매는?

- 학교급식은 품목별 구매액이 대부분 1억원 미만이므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을 해야 함
- 입찰 공고문에 참가자격 반드시 명시
  - ※ 계약 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해야 함(eaT시스템 상 자격 여부 확인 기능 있음)

9.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www.smpp.go.kr](http://www.smpp.go.kr))”, “eaT시스템(중소기업인증정보안내)”



10.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시행 후 「계약법」 등 법령이 변경된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 변경된 「계약법」을 준용하여야 함
    - 교육청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시책을 강구하여 매년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 “학교급식 분야 정책”을 안내하고, 더불어 단위학교 학교급식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급식과 관련된 계약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법령을 우선할 수 없음
11.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특정업체 2곳만 지정하여 견적서를 받아도 되는가?
- 불가능함
    - 지방계약법 상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물품계약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2인 이상 제출 받도록 하고 있음
    - 여기서 2인 이상은 입찰결과 응찰한 업체 수가 2인 이상이어야 성립한다는 의미로, 특정업체 2곳만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 입찰가능 한 모든 업체에게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임
12. 식재료 납품계약 이행 중 “부정당제재”를 받은 A업체와 계약해지 여부
- 계약해지 할 수 없음. 이미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유효함.
    -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물품계약일반조건”
    - 입찰 및 계약 당시 A업체가 제출한 서류 및 자격의 허위 등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13.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포기” 하거나 정상적인 납품이 어려운 경우(부도 등)
- 계약 포기 여부를 확인 후 “포기각서” 청구 후 입찰 당시 차 순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
    - 대표자와 연락 두절 등 “포기각서” 청구가 어려운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문(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이행 촉구(2~3회 이상) 후에 “계약해지 통보” 등 증빙서류를 확보한 후 차 순위업체와 계약체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7절.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14. 계약 이행 중도 해지 시 차 순위업체와 반드시 해야 하는가?
-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입찰을 부칠 때 정한 가격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계약해지 후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할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15. 차 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나?
- 차 순위 업체는 계약의 의무가 없으므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6.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배제 업체” 비교
- 계약가능 범위



- 부정당업자 : 모든 계약(수의계약 포함) 체결 불가 포함
- 수의계약배제 업체 : 수의계약 체결 불가

- “부정당업자”와“수의계약배제 업체”가 확정되지 않아 투찰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시”업체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까지 제재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가능함



#### 수의계약 배제업체 확인

- K-에듀과인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및 조회 방법
  - K-에듀과인에서 계약서 작성 시 수의계약배제 업체 등록 및 조회  
학교회계>계약관리>계약업체관리>수의계약배제업체관리
  - ※ 제재기간(계약시점 이전 3개월 이상 기간 설정),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17.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계약방법(수의계약, 경쟁입찰, 조달구매 등), 업체선정기준 및 기구사양은 심의 또는 자문 가능하나, 「계약법」을 준용해야 함
  - 업체선정은 심의 또는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은 아님

18. 입찰 공고 시“추정가격 2천만원”이란
- 기초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예) 추정가격이 2,000만원이면, 기초금액은 2,200만원

19. “추정가격 2천만원(기초금액 2천2백만원)” 의 중요성

- 낙찰자 선정기준이 다름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 예정가격의 88% 이상 투찰금액 중 최저가 금액 낙찰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예정가격의 90% 이상 투찰금액 중 최저가 금액 낙찰

20. 계약의 이행 중 불가항력(태풍, 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부담은?

- 용역, 공사 :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함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8절.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검사(음식)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예 : 식재료 거래명세, 제품완성본 사진 등)에 따라 작업이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처리함
    - 단,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름

(예) 위탁급식업체와 계약한 A학교가 폭우로 인해 휴업 및 급식 중단을 결정함  
⇒ 증빙서류(식재료 거래 내역서 및 사진 등) 첨부하여 대금 지급  
※ 완성된 요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식재료 계약 : 대금 지급 사유 없음. 식단변경 등 가능 사유임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21. 식재료 등의 수량 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수량조절 : 계약된 물품의 수량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조절 가능하며, 다만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 변경이 가능하며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조정할 수 없음  
단, 계약금액 10%이상 증가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22. 대금청구권 채권양도·양수 가능한가?

-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3절. 채권양도”

23. 식재료 산출내역서 공개는 의무인가?

- 식재료 구매는 총액 계약으로 “기초금액”은 공개하여야 하나 “산출내역서”는 공개의무는 아님
  - 하지만, 우리교육청 뿐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에 부정확한 “기초금액” 산출로 인하여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초금액”작성 시 제품별 단가 및 규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것임

24. 계약 기간 중 계약업체 대표가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 진행은?

- 대금청구권 외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됨
  - 단, 계약당사자가 법인이고 단지 그 법인의 대표가 변경된 것이라면,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이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질문7. 질문8.에 따라 진행
- ※ 계약 미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을 하여야 함



25. 학교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 시 “급식기구 설치 업체” 선정을 위해 학교별 “00위원회”를 해야 하는지?

- 관련 계약법을 준수하여 업체 선정
  - 사업 추진 시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급식기구선정을 위한 학교별 “00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며, 위원회를 통해 학교 여건에 맞는 기구 선정, 기구별 계약 방법 등을 결정
  - 급식기구 설치를 위한 업체는 급식기구 선정위원회와 관계없이 관련 계약 법규 및 지침 등에 따라 결정
- 급식기구선정위원회 개최 대상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급식기구물품 구매(제조)시 급식기구선정위원회 필수 개최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급식기구물품 구매(제조)시 물품선정위원회 개최로 급식기구선정위원회 같음 가능.

26. 급식기구 선정을 위한 “00 위원회” 녹취 보존 기간이 5년으로 길다. 보존 기간을 줄일 수는 없는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준용하여 위원회 기록물 보존기간은 5년임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시행령 제26조제1항 관련)	
5년	1.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7. 위탁급식 업체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계약 시기 관련 없이 1년으로 계약만 하면 되는가?

- 회계연도 단위로 계약 체결

- 수요자가 학생이므로 학년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타당함
- 학년도 중간에 계약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의 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
-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따라 매 회계연도 급식비 단가 변경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함

28. 위탁급식 업체와의 계약 시 NEIS ‘급식시스템’사용을 조건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식실 현대화로 인한 일시적인 운반 위탁 시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 운영위탁 급식교, 장기 위탁급식교 필수 적용 사항

- 일시적인 운반위탁급식교는 사용유무를 자율로 결정하되, 관련 서류 철저히 징구 필요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급식시스템’은 식재료, 급식 운영 상황에 관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 6개월 이상 장기운반위탁급식학교를 포함하여, 학교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업체에서 조리 등 전 과정을 운영하는 운영위탁 급식은 필수로 사용. 6개월 이상 장기운반 위탁급식교도 필수 사용
- 급식실 현대화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반위탁 급식교는 시스템 미사용시 ‘급식시스템’이용을 대체할 서류를 철저히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함

29. 현대화 공사로 인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친환경우수농산물 식품비 360원을 포함해서 계약이 가능한지?

- 계약 가능함

- 초등학교는 1식당 360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비에 포함함
- 대가지급 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30. 학교급식종사자 병가 및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를 학교급식비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 대체인력 인건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급
    - 대체인력 인건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학생 급식비(무상급식 및 수익자부담경비)에서 지급되고 있어 병가 등으로 인한 인건비 이중 지급에 따른 급식 식품비 비율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함
31. 학교에서 학예회를 학교가 아닌 타 기관 시설에서 실시할 경우 급식비로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제공할 수 있는지?
- 제공 불가함
    - 학교급식은 원칙적으로 빵·우유를 주식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에 의거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 급식비로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음
    - 특히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범위는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학교급식 시설을 이용한 급식에 한정하므로 타 장소에서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음
      - ※ 단, 천재지변, 급식실 운영 일시 중지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빵, 우유 제공은 가능
32. 교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급식을 하지 않은 날에 대한 급식비 환불 요구 시 처리 방법?
- 교직원 급식비 환불은 학생 급식비에 준하여 처리
    - 급식비 환불에 대한 항목, 절차, 금액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후 정산 처리
    - 학생들의 경우 전학, 장기결석 등 급식 학생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 징수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급식비 환불 처리함
    - 학교급식은 식자재 계약이 급식하기 전에 이뤄지므로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사전에 통보해야 되며 급식이 시작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급식을 하지 않았으니 환불 요구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없음

33. 학교급식소에서 일부 학생을 위한 대체식을 제공하는 경우 보존식을 보관해야 하나요?
- 집단급식소(학교급식 계획 및 교육과정에 의거 학교장 사전 승인이 있어야함)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대체식도 보존식 보관 대상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 치료를 주목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치료식은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음)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150g 이상 보존 바람직)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냉동보관하여야 함
    - 개별포장된 “김”등도 용기에 충분히 담도록 조치
34. 학교장 승인 하에 학교 행사(축제, 체육대회 등)에 학부모회(단체)에서 전교생에게 간식을 제공할 경우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나요?
- 학교장 승인 하에 “간식 제공을 인지”하였다면 "보존식"을 보관하여야 함
    - "식중독" 발생 시 불분명한 원인균으로 인해 "학교급식 식중독"으로 "결정"됨을 방지하기 위함
    - ※ 학부모회(단체)에서 제공(각출 금지)하는 간식은 "학생"에 한해 제공되어야 하며,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음
35. 유찰 2회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 기초금액 변경 가능한가요?  
(조달청 유권해석 인용, 2017. 5. 25.)
- 불가함
    - 기간 및 기초금액 변경 등 최초 입찰 조건이 달라질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여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공고 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공고입찰을 부칠 수 있으나,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